발 간 등 록 번 호
11-1543000-000754-10

2015년 가축개량지원 사업 시행지침

2015. 1.

농림축산식품부
축 산 정 책 과

목 차

Ⅰ. **총괄** ····· **1**

1. 사업주관기관 ····· 3
2. 근거법령 ····· 4
3. 성과지표 ····· 5
4. 기타 ····· 5

Ⅱ. **사업별 세부추진계획** ····· **7**

<한우개량>

1. 한우(씨수소)개량사업 지원 ····· 13
2. 한우암소검정사업 ····· 28
3. 한우육종농가사업 ····· 50
4. 한우암소개량센터 운영 ····· 70

<젖소개량>

5. 젖소(씨수소)개량사업 지원 ····· 85
6. 유우군능력검정사업 ····· 93
7. 젖소육종농가사업 ····· 110

<종돈개량>

8. 종돈농장검정사업 ····· 125
9.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사업 ····· 135

<공통>

10. 종축등록사업(한우선형심사) ····· 163
11. 가축개량기술교육 ····· 168

Ⅰ 총 괄

Ⅰ. 총괄

1. 사업주관기관

사업명	사업주관기관			비 고
	기관명(담당부서)	전화번호	담당자	
1. 한우(씨수소)개량사업 지원	농협(한우개량사업소)	041-661-4630	부장 김종집	서산
2. 한우암소검정사업	농협(한우개량사업소)	041-661-4630	부장 김종집	서산
3. 한우육종농가사업	농협(한우개량사업소)	041-661-4630	부장 김종집	서산
4. 한우암소개량센터	농협(한우개량사업소)	041-661-4690	부장 장희성	서산
5. 젖소(씨수소)개량사업 지원	농협(젖소개량사업소)	031-929-1002	부장 김성태	고양
6. 유우군능력검정사업	농협(젖소개량사업소)	031-929-1004	부장 한광진	고양
7. 젖소육종농가사업	농협(젖소개량사업소)	031-929-1004	부장 한광진	고양
8. 종돈농장검정	한국종축개량협회 (종돈개량부)	02-588-9301	부장 김성수	
9.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 사업	국립축산과학원 (가축개량평가과)	041-580-3361	과장 양보석	성환
10. 종축등록사업지원	한국종축개량협회 (한우·유우개량부)	02-588-9301	부장 정용호 부장 정승곤	
11. 개량기술교육	국립축산과학원 (가축개량평가과)	041-580-3361	과장 양보석	성환

2. 근거법령(축산법)

❑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개량·증식,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유통개선, 사료의 안정적인 수급, 축산 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개량목표의 설정)**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개량목표를 달성하고 가축개량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축산 관련 기관 및 단체 중에서 국립축산과학원과 가축개량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 **제6조(가축의 등록)**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개량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축산 관련 기관 및 단체 중에서 등록기관을 지정하여 가축의 혈통·능력·체형 등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여 등록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가축의 검정)**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능력 개량 정도를 확인·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축산 관련 기관 및 단체 중에서 검정기관을 지정하여 가축을 검정하게 할 수 있다.

❑ **제47조 (기금의 용도)** ① 축산업의 구조개선 및 생산성 향상 등에 사용할 수 있다.

* 기금사업비 등의 지원범위 : 가축의 개량·증식사업

3.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15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1	'12	'13	'14	'15			
젖소산유량 (kg/두/년)	8,652	8,800	8,723	8,944	8,865	- 유우군능력검정사업 결과자료를 토대로 분석,기준 산유량을 추정 *개량목표 고시 참고	검정참여 농가의 검정우 1산차 연간 두당 산유량 측정	농협(젖소개량사업소) 검정자료
한우 1등급이상 출현율(%) (전체)	62.4	58.1	61.3	64.7	62.4	- 한우암소검정사업 및 능력검정사업을 토대로 기준년도 근내지방도 및 1등급이상 출현율을 근거로 산정 *개량목표 고시 참고	1등급이상 한우 두수 / 한우 등급판정 두수 × 100	축산물품질평가원의 등급판정 통계자료 활용
돼지산자수 (두)	10.9	11.2	11.4	11.5	11.4	- 돼지개량네트워크사업에 의한 농장검정 참여 종돈장의 검정성적을 기준으로 기준년도 산자수로 산정 *개량목표 고시 참고	농장검정 참여 종돈장 검정성적 기준	한국종축개량협회 검정자료

4. 기타

❑ 자금배정·집행 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축산발전기금 운영규정」및「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등 관련규정을 따름

❑ 지침해석

○ 사업지침 해석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044-201-2320)

Ⅱ 사업별 세부추진계획

Ⅱ. 사업별 세부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주관	'14년도		'15년도		비 고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Ⅰ. 한우 개량			**29,269**		**34,829**	
1. 한우(씨수소)개량 사업 지원	농 협	1개소	24,755	1개소	28,202	
2. 한우암소검정사업	농 협	12천호 (55개소)	2,400	8.5천호 (55개소)	3,902	관리두수 200천두
3. 한우육종농가사업	농 협	102호	2,114	104호	2,725	
4. 한우암소개량센터	농 협	1개소	(547)	1개소	(423)	한우(씨수소) 개량사업 포함
5. 고능력암소축군조성	농 협	-	-	1개소	(3,650)	한우(씨수소) 개량사업 포함
	지자체	-	-	2개소	(600)	
Ⅱ. 젖소 개량			**8,263**		**9,628**	
1. 젖소(씨수소)개량 사업 지원	농 협	1개소	6,324	1개소	7,689	
2. 유우군능력검정	농 협	108천두	1,939	108천두	1,939	
3. 젖소육종농가	농 협	14호	(870)	15호	(1,770)	젖소(씨수소) 개량사업 포함
Ⅲ. 돼지 개량			**860**		**1,603**	
1. 검정소검정	양돈협	-	-	-	-	비예산
2. 농장검정	종개협	48천두	172	49천두	172	
3. 네트워크구축	축산원	-	688	-	1,431	
Ⅳ. 가금류 개량			**-**		**500**	
1. 토종순계 (PL) 분산 사육장 설치 지원	한 협	-	-	1개소	500	별도 시행
Ⅴ. 공통사업			**510**		**354**	
1. 종축등록(선형심사)	종개협	20천두	60	50천두	150	
2. 유성분분석기	종개협	1개소	250	-	-	
3. 개량기술교육	축산원	9개과정	180	9개과정	180	20% 자담
4. 한국홀스타인품평회	종개협	1회	20	1회	24	별도 시행
합 계			**39,512**		**46,314**	

한 우 개 량

1 한우(씨수소) 개량사업 지원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 **한우의 혈통등록, 능력검정, 유전능력평가, 선발 및 계획교배의 반복과정을 거쳐 보다 유전적으로 우수한 경제형질을 지닌 종축으로 개량하고 그 개체의 능력을 널리 이용**

○ 유전적 능력이 우수한 보증씨수소를 선발하여 우량정액을 생산·공급하고, 순종 개량방법으로 한우능력을 향상하며, 우량한우 보호 및 순수 혈통을 보전

❑ **FTA를 대비하여 한우의 생산성 향상 및 품질 고급화로 농가 소득 증대 도모**

나.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제5조(개량목표의 설정), 제7조(가축의 검정) 및 제47조(기금의 용도) 등

다.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 사업기간 : 계속사업('83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년까지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이후
합 계	216,439	26,070	28,427	32,202	
- 보 조	195,588	22,429	24,755	28,202	
- 융 자					
- 지방비					
- 자부담	20,851	3,641	3,672	4,000	

* 자부담은 농협 인건비 부담액임
* '15년도 보조금은 자산취득비 포함

라. 사업주관기관 : 농협 한우개량사업소

마. 사업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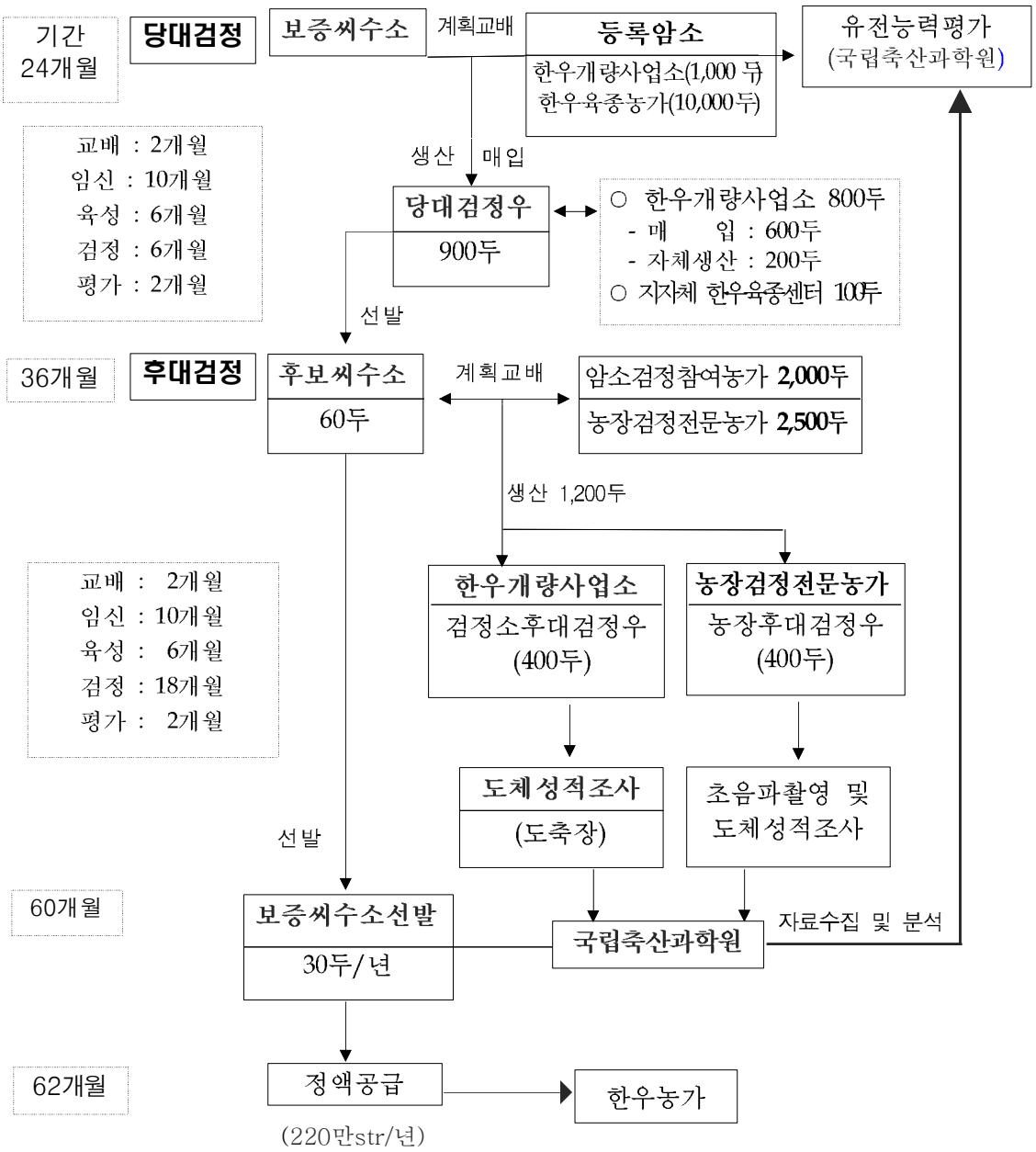

* 당대·후대검정우, 보증·후보씨수소 두수는 유전능력 평가결과나 여건변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2015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①	한우능력검정 및 정액 생산·공급

가. 사업대상 및 지원요건

❑ **사업대상 : 농협 한우개량사업소**

○ 축산법에 따라 가축개량기관 및 종축검정기관으로 지정받아 한우 종축검정 및 개량을 시행하고 있는 기관

❑ **지원요건 :** 가축검정기준에 따라 우량 보증씨수소 선발을 위해 한우 능력검정을 실시하고 선발된 보증씨수소에서 정액을 생산·공급

나.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보조사업자(농협 한우개량사업소)가 씨수소 선발을 위해 시행하는 한우능력검정과 보증씨수소 정액의 생산·공급에 소요되는 운영비 및 인건비 보조 지원

* 당·후대 검정우 매입 및 농가를 지원하는 검정자료 조사비 포함

다. 지원형태 및 사업내용

❑ **자금의 재원 :** 축산발전기금

❑ **지원형태 :** 정액 보조

❑ **사업 내용**

〈 당대검정 〉

○ 계획교배로 생산된 당대검정우를 검정하여 후보씨수소 선발

○ 검정기관 : 농협 한우개량사업소

* 한우 육종농가사업에 참여하는 도 축산기술센터가 희망할 경우 국립축산과학원의 사업승인을 받아 직접 당대검정 실시 가능

○ 검정목표 : **당대검정 900두 내외**(농협 한우개량사업소 800두, 한우육종센터 100두)

○ 당대검정우 확보 : 농협 한우개량사업소가 자체 생산한 송아지와 한우육종농가에서 송아지를 매입

- 보증씨수소 및 씨암소의 유전능력과 유전적 근친도를 고려하여 확보
- 검정우 매입 : 등록우 경매시장 평균시세의 130%이내에서 매입 (전국 경매시장 중 25두 이상 출품 지역의 평균시세를 기준)

* 당대검정우 매입 시 확보두수가 부족하더라도 가축질병, 혈통정보의 정확성을 고려 일반농가에서 매입하지 않고 당대검정 실시

* 다만, 농협 한우개량사업소에서 판매된 수정란이식으로 분만한 개체 중 결격사유가 없는 개체는 매입가능

○ 검정방법 : 농협 한우개량사업소는 가축검정기준)에 따라 실시

- 한우육종농가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는 자체 생산한 송아지로 당대검정우를 선정하고, 직접 당대검정 추진

○ 후보씨수소 선발 : 연간 **60두 내외**

- 국립축산과학원은 한우개량사업소에서 제공한 당대검정 성적을 종합분석(유전능력평가)하고 가축개량협의회 협의를 거쳐 후보씨수소를 선발

* 지자체는 검정완료 시 개체별 검정성적을 농협 한우개량사업소에 통보하고 한우개량사업소는 이를 취합하여 국립축산과학원에 제출

- 지자체에서 생산·검정한 당대검정우가 후보씨수소로 선발될 경우 농협 한우개량사업소는 해당 소를 매입(산지평균시세의 130% 이내에서 매입)

‹ 후대검정 ›

○ 후보씨수소의 정액을 혈통등록 이상 암소에 계획교배 하고, 생산된 자손(후대)의 능력검정을 통해 보증씨수소를 선발

○ 검정기관 : 농협 한우개량사업소

- 검정소 후대검정*과 농장 후대검정**을 병행하여 실시

* 후보씨수소의 자손을 검정기관이 매입하여 검정소에서 18개월간 동일 조건으로 사육하면서 검정

** 후보씨수소의 자손을 생산한 농장이 직접 비육 사육하는 상태에서 체중조사와 초음파촬영(24개월령)을 실시

○ 검정목표 : 800두 내외(검정소 400두, 농장 400두)

○ 후대검정용 수송아지(검정 대상축) 확보

- 검정소 후대 검정우

· 검정기관은 사전에 한우암소검정사업에 참여하는 조합을 대상으로 후보씨수소 정액사용 및 후대검정우 생산 신청을 받아 40개소(암소 기준 2,400두) 내외를 선정

* 다만, 참여조합의 신청 저조시에는 미참여 조합도 선정 가능

· 사업참여 조합(소속농가)의 암소별로 후보씨수소 계획교배를 실시하고 생산된 수송아지를 검정우로 매입

* 도별 일반시장 평균시세의 130% 이내에서 매입하고, 도별 일반시장 평균시세가 전국 평균 이하인 경우 전국 평균시세의 130% 이내로 매입)

- 농장 후대 검정우

· 한우 농장후대검정 전문농가 혹은 한우육종농가에서 신청을 받아 농장 후대검정 참여농가를 선정

· 농장후대검정 참여농가의 계획교배로 생산된 수송아지를 해당 농가에서 사육(검정소후대검정 시기와 동일)

* 농장후대검정에 참여하는 농가에서 검정자료 제공시 자료조사비 지급

❍ 검정방법 : 농협 한우개량사업소는 가축검정기준에 따라 실시

- 체중측정, 사료섭취량, 초음파생체단층촬영, 도체조사 실시
- 후대검정우 도체성적 조사는 도체의 등급판정 항목별 성적을 활용하고 검정소후대검정은 부위별 수율조사 실시

❍ 보증 씨수소 선발 : **연간 30두 내외**

< 농장후대검정 전문농가 운영 >

◦ 한우 보증씨수소의 선발 정확도 향상을 위해 전문농가를 선정하여 농장후대검정 실시

◦ 일반 한우사육농가에서 신청을 받아 40호 내외로 선정하고 교배 및 검정 등 일련의 업무를 수행

- 12개월령 이상인 혈통 및 고등등록 교배대상 암소를 연간 호당 20두 이상 선정하고, 후보씨수소 정액으로 계획교배 실시(교배기간 : 1~2월, 7~8월)
- 검정방법은 가축검정기준에 의하여 실시

◦ 신규 전문농가는 검정자료 조사를 위한 우형기(보정틀 및 유도로 포함) 설치 시 호당 8,200천원(최대) 지원

◦ 농장후대검정 참여로 생산된 수송아지의 이유자료(생시·이유시 체중) 조사·제출 시 100천원/두, 발육자료 조사·제출 시(6·12·18·24개월령 체중측정 및 24개월령 초음파 촬영) 400천원/두 지원

◦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립축산과학원과 협의하여 실시

[2015년 한우 농장후대검정 전문농가 선정계획]

구분	2013~2014	2015	누 계
한우 농장후대검정 전문농가	27	13	40

〈 정액생산 및 공급 〉

○ 후보씨수소는 수시로 정액채취 훈련 및 정액검사로 정상상태 유지

○ 보증씨수소는 주당 2회 정액채취를 원칙으로 하되 건강상태, 정액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가감

○ 농협 한우개량사업소는 정액 수요 및 재고상황을 매월 분석하여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보증·후보씨수소 정액생산·공급

- 정액 생산·공급용 후보·보증씨수소는 가축개량협의회에서 정한 바에 따름

○ 공급된 정액에 대하여는 수시로 공급단계별 품질검사, 수태율, 비정상 송아지(이모색 등) 생산여부 등에 대해 현지조사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민원 방지

〈 기 타 〉

○ 농협 한우개량사업소는 구체적인 검정계획 등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립축산과학원에 보고

- 한우 정액공급 실적은 매월 다음 달 1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국립축산과학원은 지자체 등이 보증씨수소 선발을 위한 당대검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검정방법, 생산된 자료의 수집·평가방법 등을 지자체와 사전 협의

라.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액 기준 : 해당 연도 가축개량지원사업 보조금지출계획서와 보조금 교부조건에 의함**

구분	사업물량	단가(천원)	사업비(백만원)
당대검정용 송아지 매입비	600두	2,750x1.3	2,145
후대검정용 송아지 매입비	400두	2,700x1.3	1,404
후보씨수소 매입비	15두	4,000x1.3	78
한우육종농가 고능력 암소매입(공란유	5두	8,000x1.3	52

마. 자금배정 및 집행

❑ 자금배정·집행

○ 매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한도배정을 승인 받은 후 농협 축발기금사무국에서 보조금을 수령하여 인건비 및 운영비 집행

○ 자금집행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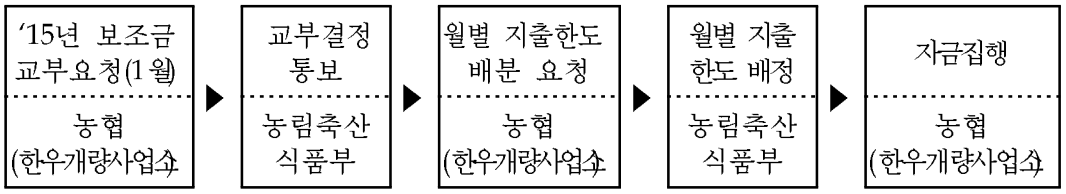

바.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 사후관리

○ 농협 한우개량사업소는 씨수소의 성실한 관리와 최상의 고품질 정액생산·공급으로 농가 서비스 강화

- 지역별 사육두수, 농가 수요 등을 감안해 투명한 정액 공급체계 구축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

○ 국립축산과학원장은 한우능력검정 추진사항을 점검 및 지도

❑ 결과보고 및 정산

○ 실적보고 : 농협 한우개량사업소 → 국립축산과학원 → 농림축산식품부

○ 정산보고 : 농림축산식품부 및 축발기금사무국에 보고

보 고 사 항	보 고 기 한	서 식
○ '15년 한우능력검정 추진실적	매분기말 익월 10일까지	<서식 1>
○ 정산보고	(익년도 2월말까지)	자체서식

②	고능력 씨암소 축군 조성

가. 사업대상 및 지원요건

❑ **사업대상 : 농협**(가축개량원 한우개량사업소) 및 **도**(축산관련연구기관)

○ 축산법에 따라 가축개량기관 및 종축검정기관으로 지정받아 한우 종축검정 및 개량사업을 시행하는 기관 중 씨암소를 보유한 지자체

❑ **지원요건**

○ 씨수소를 생산하는 육종용 암소집단을 별도로 조성하고 이들 암소를 속성 개량하여 단기간에 고능력 축군 조성

❑ **대상자 선정**

○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도 축산관련연구기관 중 사육시설, 육종용 씨암소 집단 보유 규모 등 사업시행 여건을 평가하여 선정

- 사업신청자를 대상으로 2월 중 평가를 거쳐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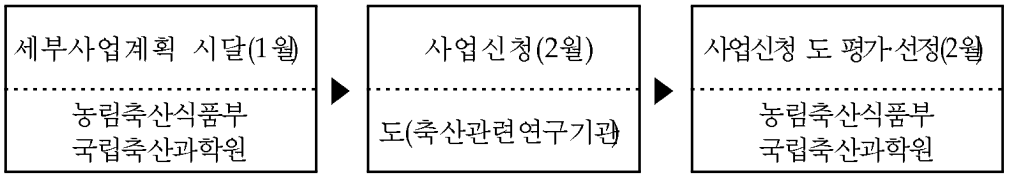

나.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협 한우개량사업소 : 암소 및 검정우사 신축비, 당대검정우 구입비 등

○ 도 : 우사 시설보완 및 정액 채취·냉동보관 장비 등

* 지자체는 암소우사, 암소 육성우사, 거세비육우사 등 신축은 포함하지 않은 예산임

< 사업참여 소요 우사규모 및 부대시설 >

- 검정우사 규모(50두/년 검정시: 상반기 25, 하반기 25)
  · 검정우사 : 25~30두 규모(거세비육을 별도시설에서 할 경우)
  · 거세비육도 단방에서 할 경우 100두 규모(당대검정 25, 비육 75)
- 별도의 정액채취실, 정액동결 및 보관 설비의 구비가 필요

다. 지원형태 및 사업내용

❑ **자금의 재원 :** 축산발전기금

❑ **지원형태 :** 정액 보조

❑ **사업 내용**

○ 씨수소를 생산하는 육종용 암소집단을 별도로 조성하고 이들 암소를 속성 개량하여 단기간에 고능력 축군 조성

- 당대검정을 통해 선발한 씨수소의 경제형질 유전능력을 암소에 전달하는 과정을 3세대 동안 반복하여 단기간에 암소의 유전능력을 향상

- 사업종료 후 조성된 고능력 암소축군은 후보 씨수소 생산을 위한 육종용 암소집단으로 사용

○ 암소 축군 규모 : 600두

- 사업대상 : 농협 한우개량사업소, 도 축산관련연구기관(축산연구소)

- 농협 : 200두, 지자체 축산연구소 400두

* 지차체는 4개소×100두로 조성(세부적인 두수는 참여 지자체 실무협의회를 통해 조정)

○ 사업기간 : 10년(3세대 : 1세대 검정기간 40개월)

* 현재 검정체계는 6년 소요(당/후대검정)

< 사업추진체계>

○ 당대검정만으로 우수 씨수소를 조기선발하고, 선발된 씨수소의 유전능력을 암소집단에 전달하는 과정을 3세대간 계속적으로 실시

- 당대검정우는 정액을 채취한 후 거세·비육(30개월)하고 도축성적 등의 경제형질에 대해 유전능력 평가결과를 거쳐 암소집단에 사용
- 우량 유전능력을 받고 태어난 암소는 당대검정(증체, 외모심사, 초음파)과 유전능력평가를 거쳐 우수 암소를 선발하고 기존 암소집단을 대체

○ 후보우 확보 후 24개월 이내에 씨수소 선발 및 정액 이용

- 씨수소는 15두/년 내외 선발(연간 150두에서 15두 선발)

* 시험검정우 확보(6개월령) → 당대검정(6~12개월령) → 정액채취(13~14개월령) → 거세·비육(15~30개월령) → 도축(30개월령)·선발 → 정액이용(31개월~)

* 2단계 씨수소는 첫 씨수소 선발 후 42개월 후 선발
  인공수정(2~3개월) → 임신·분만(10개월) → 송아지육성(6개월)

< 씨수소 선발 및 사업수행 체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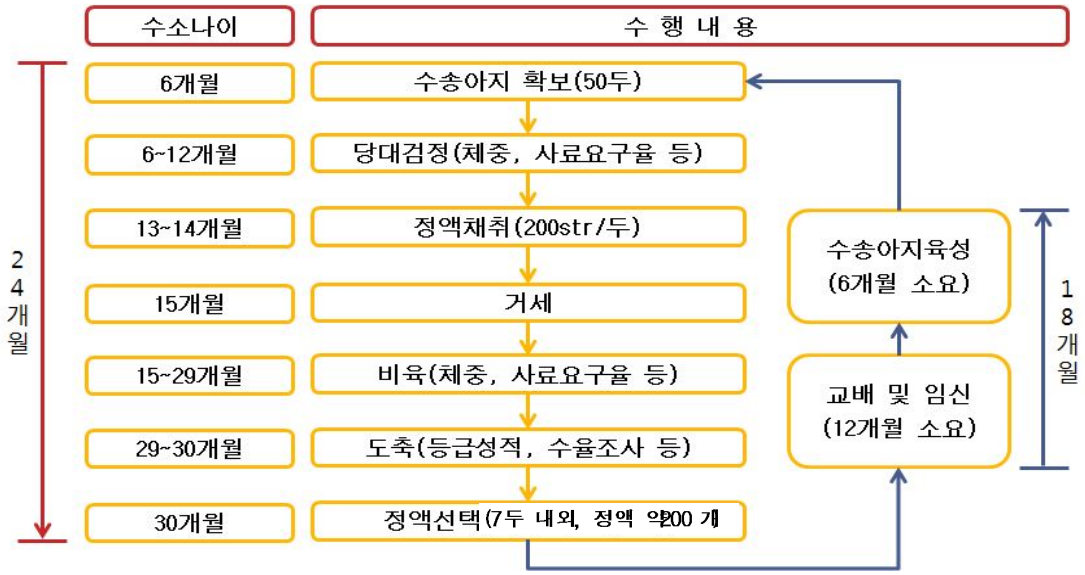

* 1세대(최초) 정액선택에 24개월 소요(수송아지확보 → 정액선택)

* 2세대정액선택에 42개월(18+24) 소요(교배/임신→수송아지육성→수송아지확보→정액선택)

○ 최초 씨수소는 농협 한우개량사업소에서 일괄적으로 선발하여 사업 참여 지자체에 정액 공급

- 농협 한우개량사업소는 '15년 당대검정우 후보씨수소에서 제외된 소를 25두씩 선발하여 정액채취 후 30개월령까지 거세비육

* 유전능력, 발육성적은 우수하나, 정액량 부족, 근친도 등이 높아 제외된 소를 선발

- 증체, 도체성적 및 유전능력평가를 거쳐 정액공여 씨수소 연간 20두 내외 선발(사업활성화 후 '17년 사업수행 기준)

○ 사업참여 기관(농협 한우개량사업소, 지자체)은 보유 암소에 1세대 정액을 계획교배한 후 태어난 수송아지는 30개월까지 거세·비육

- **(예비검정)** 태어난 소의 유전적 질병, 모색 등을 고려하여 전체의 80% 수준을 시험검정우로 선발
- **(당대검정)** 12개월까지 체중, 외모심사, 사료요구율 등 검정
- **(정액채취)** 13~14개월령에서 정액채취 후 거세(저능력, 정액채취 불가 소 도태)
- **(비육·검정)** 30개월까지 비육 및 체중·사료요구율 검정
- **(유전평가)** 도축 후 도체성적 및 검정성적, 혈통정보를 바탕으로 유전능력평가(국립축산과학원)

○ 암송아지는 12개월령까지 당대검정을 실시하고 기존 암소와 함께 유전능력평가를 실시한 후 우수축을 선발, 기존 암소를 대체

- **(당대검정)** 유전적 질병, 모색 등을 고려하여 일부를 제외하고 12개월까지 체중, 외모심사, 초음파검사를 실시
- **(평가·교체)** 기존 암소와 함께 유전능력평가를 실시한 후 저능력우 도태

* ex) 기존 100두 암소와 당대검정이 끝난 35두의 암소를 함께 유전능력평가 한 후, 능력이 낮은 35두는 도태하고 새롭게 조성된 100두에 계획교배

라.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액 기준 : 해당 연도 가축개량지원사업 보조금지출 계획서와 보조금 교부조건에 의함

구분	사업물량	단가(백만원)	사업비(백만원)
고능력씨암소 별도축군 조성(지자체)	2개소	300	600

마. 자금배정 및 집행

❑ 자금배정·집행

○ 매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한도배정을 승인 받은 후 농협(축발기금사무국)에서 보조금을 수령하여 인건비 및 운영비 집행

○ 자금집행 단계

'15년 보조금 교부요청(3월)	▶	교부결정 통보	▶	월별 지출한도 배분 요청	▶	월별 지출 한도 배정	▶	자금집행
도 축관련연구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도 축관련연구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도 축관련연구기관

바.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 사후관리

○ 국립축산과학원장은 사업추진 현황 등에 대해 분기별로 현지 점검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도·감독

- 사업시행 도(축산관련연구기관) 또는 농협 한우개량사업소가 사업계획 및 일정에 따라 추진하는 지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시 기술지원
-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조기에 추진되도록 지도하고 이월 및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보조금 교부목적, 보조사업 내용 및 조건,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전액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 결과보고 및 정산

○ 실적보고 : 도(축산관련연구기관), 농협 한우개량사업소 → 국립축산과학원 → 농림축산식품부

○ 정산보고 : 농림축산식품부 및 축발기금사무국에 보고

보 고 사 항	보 고 기 한	서 식
○사업추진실적	매분기말 익월 10일까지	자체서식
○ 정산보고	(익년도 2월말까지)	자체서식

3. 기타사항

❑ 사업평가

○ 한우개량추세조사를 통하여 한우개량 성과를 평가

❑ 사업환류

○ 한우개량추세조사 분석을 통한 한우개량 시책 및 연구자료로 활용

○ 한우개량추세조사(정기추세조사) 결과를 한우관련기관과 농가에 홍보 및 교육 자료로 활용

- 간이추세조사(모니터링 조사)를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실시하여 한우관련 기관과 농가에 홍보 및 교육 자료로 활용

○ 정액생산 및 공급물량 추이를 분석하여 시책자료로 활용

❑ 희소한우(칡소, 흑우) 정액 공급

○ 국립축산과학원은 도 축산관련연구기관, 농협 등 가축개량기관과 협력하여 희소한우 보유 농가에 대한 정액공급 대책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단일염기다형성 유전자형 검사

○ 주관기관은 당대검정우 및 후대검정우에 대한 단일염기다형성(SNP) 유전자형 검사를 실시하고 국립축산과학원에 보고

<서식1>

한우능력검정사업 추진실적 보고(/4분기)

1. 사업 추진실적

세부사업	단위	평가구분	연 간 계획(A)	( )분기까지		진도(%)	
				계획(B)	실적(C)	C/B	C/A
가. 당대검정		사업량					
○ 교 배(사업소)	두						
○ 수송아지 확보	두						
- 사업소(선발)	두						
- 개량농가(매입)	두						
- 육종농가(매입)	두						
○ 검정개시	두						
○ 후보씨수소 선발	두						
- 사업소분	두						
- 지자체(매입)	두						
나. 후대검정							
○ 농장후대 전문농가	호						
○ 교 배	두						
- 검정소	두						
- 농장	두						
○ 검정대상축 생산	두						
- 검정소	두						
- 농장	두						
○ 검정개시	두						
- 검정소	두						
- 농장	두						
○ 보증씨수소 선발	두						
다. 정액생산공급							
○ 씨수소사육	두						
- 보증씨수소	두						
- 후보씨수소	두						
○ 정액생산							
- 보증씨수소	천str						
- 후보씨수소	천str						
○ 정액공급	천str						

2. 사업비 집행실적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보 조 금(/4분기까지 실적)								
	축발기금			농협			계		
	연간 계획	실적	%	연간 계획	실적	%	연간 계획	실적	%
합 계									
○한우개량									
○시설비									
○자산취득비									

2 한우암소검정사업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 **한우 암소에 대한 혈통관리, 발육·생체육질 조사 및 유전능력 평가(추정)를 통해 농가의 암소개량을 촉진**

○ 암소별 능력평가 정보를 바탕으로 저능력우의 도태를 유도하고 맞춤형 씨수소 계획교배를 지원함으로써 농가단위 암소개량을 지원

❑ **씨수소 개량과 함께 농가 암소개량을 촉진하여 한우 비육우의 생산성 향상 및 품질고급화를 지원**

나.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제5조(개량목표의 설정), 제7조(가축의검정) 및 제47조(기금의 용도) 등

다.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년까지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이후
합 계	4,885	**2,675**	2,400	3,902	
- 보 조	4,885	**2,675**	2,400	3,902	
- 융 자	-	-	-	-	
- 지방비	-	-	-	-	
- 자부담	-	-	-	-	

라. 사업주관기관

❑ **사업주관기관 : 농협 한우개량사업소**

❑ **시행기관 : 기초한우사업단(지역축협 등)**

❑ **협조기관**

- ○ 국립축산과학원 : 국가단위 유전능력평가 및 개량컨설팅기관 표준화 등
- ○ 한국종축개량협회 : 종축등록심사
- ○ 축산물품질평가원 : 소 도체 등급판정
- ○ 개량컨설팅기관(대학 및 개량기관) : 지역단위 유전능력평가 및 시행기관 컨설팅
- ○ 초음파 판독기관 : 농협 축산연구원
- ○ 초음파촬영 : 초음파촬영자(시행기관 및 개량컨설팅기관)
- ○ 친자감정기관 : 소이력제 생산단계 DNA 검사기관 및 한우개량사업소로 암소검정농가 송아지 친자감정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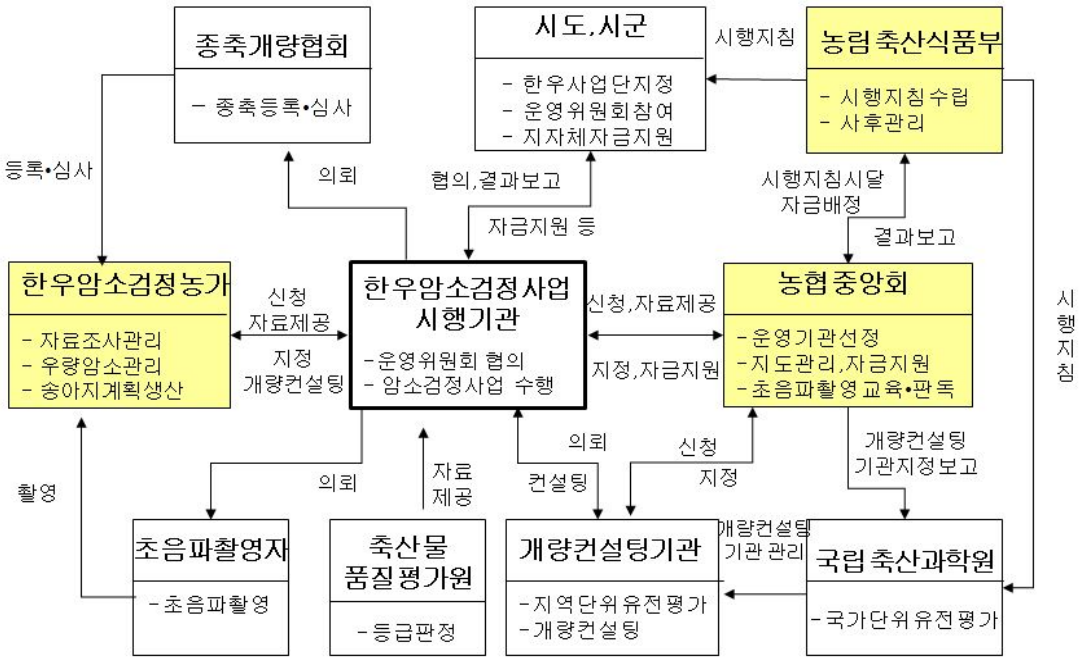

2. 2015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가. 사업대상 및 지원요건

❑ 사업대상

○ 사업시행기관 : 축협조합, 한우협회, 한우조합

- 지자체에서 지정한 기초한우사업단 중에서 농협이 선정한 조합·협회로서 농가지도비 자부담 참여농가가 50호 이상이고, 12개월 이상 혈통관리 암소 1,000두 이상 보유(암소검정사업)
- 생후 12개월령 이상 한우 혈통·고등등록 암소를 100두 이상 사육하는 조합(고능력 암소 수정란 이식사업)

○ 한우검정농가 : 시행기관에서 지정한 한우농가로서 12개월 이상 혈통관리 암소를 5두 이상 사육하는 농가

❑ 지원조건

○ 사업시행기관 농가지도비

- 한우암소검정사업에 참여한 농가별로 인공수정, 송아지분만 및 암소검정(체중, 체척, 초음파촬영)자료를 수집·관리하고 농협 한우종합관리시스템(암소검정사업관리)을 통해 자료를 농협 한우개량사업소에 제출
- 농협 한우개량사업소가 지정한 대상우의 친자감정을 수행
- 사업주관기관이 지정한 개량컨설팅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지역단위 유전평가 및 시행기관 개량 컨설팅을 수행

○ 고능력 암소 수정란 이식사업

- 사업시행기관이 생축장에서 혈통관리 암소를 직접 100두 이상 사육

* 생축장을 미보유하거나 혈통관리 암소 사육두수가 100두 미만인 경우 생축장을 보유한 지자체(시·군)와 공동으로 사업 참여 가능

○ 농가 암소 개량지원비

- 고능력 암소로 지정되어 당해 연도에 5~9산차 송아지를 생산하거나, 저능력 암소로 지정된 2산차 이하의 암소를 도태

나. 대상자 선정방법 및 절차

❑ 사업대상자 선정

< 암소검정사업 >

○ 암소검정사업 신청

- 사업참여 희망기관은 대상지역, 개량방향 및 달성방법 등 '한우암소검정사업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한우암소검정사업 보조금 신청서'와 함께 농협 한우개량사업소에 제출('15.1월)

< 암소검정사업 신청 전 절차 >

· 시행기관은 지자체, 개량컨설팅기관 및 자체 한우사업단 운영위원회 등과 협의하여 암소검정사업 계획을 수립

· 시행기관은 암소검정사업 참여 대상농가에게 암소검정사업계획을 설명하고 사전에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의 참여 신청서를 접수

○ 한우암소검정 시행기관 선정

- 농협 한우개량사업소는 5인 이상의 시행기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기준에 따라 시행기관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평가한 후 사업량을 고려하여 시행기관을 선정('15.2월)

- 전년도 암소검정사업 시행기관은 사업실적평가에 따라 사업계속 참여여부를 결정(사업실적 부진조합은 선정에서 제외)

○ 한우암소검정 사업량 배정

- 농협 한우개량사업소는 사업계획 및 실적에 따라 시행기관의 사업량 및 사업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배정·통지하되 보조금 교부에 따른 조건과 의무사항을 반드시 통지('15.2월)
- 사업량 배정은 검정원 1인당 200호 이내로 정하되 최대 600호 이내로 제한(단, '14년도 시행기관은 제외)

○ 암소검정사업 참여농가 지정

- 시행기관은 농협 한우개량사업소가 배정한 사업물량 내에서 참여신청 농가 중 시행기관의 자체 기준에 따라 참여농가를 지정·통지하고, 사업량을 배분하여 농협에 보고('15.2월)
- 농협 한우개량사업소는 시행기관의 참여농가 지정결과에 따라 시행기관 지정 및 사업량 배정 등에 관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15.2월)

< 고능력 암소 수정란이식 사업 >

○ 고능력 암소 수정란이식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조합은 농협 한우개량사업소에서 정한 신청서식에 따라 신청

* 신청서, 선정기준, 세부일정 등은 농협 한우개량사업소에서 별도 통보

○ 농협 한우개량사업소는 가축개량협의회 전문가 협의를 거쳐 사업대상자를 선정

- 사육시설은 축산업허가제에 따라 허가를 받고 생후 12개월령 이상 한우 혈통·고등등록 암소를 100두 이상 사육하며 계절번식(수정란이식)이 가능해야 함
- 사육하고 있는 12개월령 이상 암소에 대해 신청일 기준 2개월 내에 질병검진항목(브루셀라병, 우결핵병, 요네병, 구제역)의 검진을 실시하여 음성판정
- 체중측정기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보유

다. 지원자금의 용도

○ 농가지도비는 시행기관의 규정 및 예산계획에 따라 농가지도에 필요한 사업비(인건비, 수용비 및 지도수당 등)로 집행

○ 초음파촬영비(암소검정비)는 초음파촬영 및 판독 수수료로 지급

○ 친자감정비는 친자감정기관에 분석비로 지급

○ 개량컨설팅비는 시행기관과 개량컨설팅기관 간 체결한 용역비 등으로 활용

○ 고능력 암소 개량지원비는 송아지 또는 어미소 사육에 필요한 사료 등의 구입비로 사용

○ 고능력 암소 수정란 이식사업 지원비는 시행기관(지역축협)의 수정란 구입비, 이식지원비, 질병검진비, 사료비 등으로 사용

○ 저능력 암소 조기도태 인센티브는 저능력 암소를 조기에 도태하는 농가에 지원

라. 지원형태 및 사업량

❑ 농가지도비

○ 지원기준 : 시행기관이 한우암소검정사업 참여농가 관리한우의 발육 및 번식성적 등을 조사할 경우 실적에 따라 호당 지급액을 차등 지원

- 축발기금 지원 이외의 부족분 50%(호당 130천원/년)는 농가에서 부담

* 단, 농가지도비 농가부담분은 지자체 및 시행기관에서 일부 부담할 수 있으며, 축발기금 지원은 농가에서 자부담할 경우 지원

* 2015년 사업실적에 따라 농가지도비 차등 지원(우선 70천원/호 지원, 사업실적에 따라 상위 10개소 내외 90천원/호, 하위 10개소 내외 30천원/호, 그 외 60천원/호)

○ 사업량 : 8,500호

○ 한우암소검정농가 및 시행기관 사업의무

- 한우암소검정농가는 정확한 혈통관리를 위해 인공수정 후 60일 이내에 시행기관에 신고하고, 시행기관은 인공수정자료를 전산관리하고 농가방문 시 인공수정 여부를 확인
- 인공수정 후 송아지를 생산한 농가는 분만 후 5일 이내에 시행기관에 신고(이력시스템 대행기관에도 신고)하고, 시행기관은 송아지 분만자료를 전산관리하며 농가방문 시 분만여부를 확인
- 시행기관은 한우암소검정농가에게 보유 암소의 생시, 이유시 및 6~9개월 체중 측정(또는 체척)을 지도하고, 농가에서 측정한 자료를 전산관리
- 시행기관은 검정농가에게 12~15개월 체중 또는 체척 측정을 지도하고 농가와 함께 측정한 후 자료관리
- 시행기관은 18~30개월 암소 초음파촬영을 지도하고 촬영자료를 판독기관에 송부
- 시행기관은 친자감정용 샘플을 채취하여 친자감정기관에 송부
- 시행기관은 한우암소검정농가의 지도·교육(컨설팅)을 실시
- 시행기관은 개량컨설팅기관이 제공한 교배조합에 의거 정액 소요량을 조사하여 농협에 배정 요청
- 한우암소검정농가는 관리암소를 계속 사육하여 송아지를 생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동·출하 시 5일 이내에 시행기관에 신고하고 시행기관은 이를 전산처리

❑ **초음파촬영비(암소검정비)**

○ 지원기준 : 한우암소검정 농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18~30개월 혈통관리 암소 초음파촬영 시 15천원/두 지원

- 초음파촬영 시 50%(15천원/두)를 시행기관에 지원하고 축발기금 지원 이외의 부족분(15천원/두)은 농가 및 지자체 부담으로 충당

*** 초음파 촬영은 1회에 한하여 6개월 이후에 중복촬영 가능**

○ 사업량 : 10,000두

○ 초음파촬영·판독기관 사업의무

- 시행기관(초음파촬영자)은 초음파촬영 대상우를 농가에 통보하고, 농가 요청 시 초음파촬영자에 의뢰하여 측정
- 초음파 판독기관은 촬영된 영상에 대하여 판독결과를 시행기관(초음파촬영자)에 통보

*** 시행기관은 초음파촬영자 명단을 사업주관기관에게 통보**

❑ 친자감정비

○ 지원기준 : 농협에서 정한 친자감정 대상우의 친자분석을 완료한 경우 조당(어미소 및 송아지) 30천원 이내에서 친자감정기관과 협의한 계약금액 지원

○ 사업량 : 22,000조

○ 물량배정 기준

- '14년도 한우암소검정사업 시행기관 평가 결과의 기관별 친자 일치 비율에 따라 차등 배정(사업 물량 내에서 최소 200조 이상)

친자일치율	75% 미만	75%이상 90%미만	90% 이상
사업량	참여농가 * 2.8조	참여농가 * 2.5조	참여농가 * 2조

*** '15년도 신규 시행기관은 참여농가 * 2.8조 수준으로 적용**

○ 친자감정기관 사업의무

- 시행기관은 친자감정 대상우의 샘플을 채취하여 주관기관에서 선정한 친자감정기관에 혈통정보와 함께 송부
- 친자감정기관은 친자감정결과를 주관기관 및 시행기관에 통보

❑ 개량컨설팅비

○ 지원기준 : 시행기관이 개량컨설팅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지역 단위 유전평가 및 개량관련 컨설팅을 수행할 경우 지원

○ 사업량 : 55개소 이내

○ 개량컨설팅기관 사업의무

- 시행기관은 혈통자료, 발육자료, 초음파자료 및 도체자료 등 암소평가에 필요한 형질을 개량컨설팅기관에 제공
- 개량컨설팅기관은 시행기관에 대해 아래 사항을 수행
  · 개량방향 설정
  · 암소검정자료를 분석한 결과와 혈통정보 등을 통해 작성한 교배조합을 연 2~4회 제공
  · 시행기관 검정원 교육 등 개량컨설팅을 연 6~8회 수행

❑ 고능력암소 개량지원비

○ 대상우 : 참여농가의 관리대상우 중 4산차 이상 암소

* 산차 기준은 농협 한우종합관리전산시스템의 전산입력 자료를 근거로 함

○ 지원기준 : 고능력암소로 지정되어 당해 연도에 5~9산차 송아지를 생산한 암소 사육농가에 개량지원비 지급(5~9산 : 200천원/두)

* '14년 고능력암소로 선정된 개체 중 '14.12월에 송아지를 생산하고 개량지원비를 지원받지 못한 경우, '15년 사업비 중 일부를 별도로 배정하여 지급하고, '15년도에는 당해연도 기준에 따라 신규로 지정받아야 함

○ 사업량 : 1,685두(5~9산)

○ 지정방법 및 절차

- 물량 배정 : '14년도 한우암소검정사업 시행기관 평가 순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기관별 차등 배정(사업 물량 내)

구분	상위 10개 기관	중위 기관	하위 10개 기관
배정비율	관리두수의 1.2% 수준	관리두수의 1.0% 수준	관리두수의 0.7% 수준

*** '15년도 신규 시행기관은 관리두수의 1.0% 수준 기준으로 적용**

- 대상우 지정기준 마련

  · 농협 한우개량사업소는 시행기관별 혈통 및 번식자료와 시행기관별 등급판정 자료를 개량컨설팅기관에 제공하고 개량컨설팅기관에 유전능력평가 요청('15.2월)

  · 시행기관과 개량컨설팅기관은 유전능력평가 자료와 번식성적 등을 바탕으로 고능력암소 지정기준 마련

- 대상우 선정 : 시행기관은 고능력암소 지정기준 순위에 따라 배정받은 물량 범위 내에서 고능력암소 선정('15.3월)

○ 고능력암소 사육농가 의무사항

- 사업대상 농가는 인공수정기록 및 혈통관리를 철저히 하고, 인공수정 후 60일 이내 시행기관에 신고

- 고능력암소가 송아지를 생산한 농가는 분만 후 5일 이내에 시행기관에 신고(이력시스템 대행기관에도 신고)

- 시행기관은 인공수정으로 고능력암소에서 생산된 송아지의 혈통이 등록될 수 있도록 농가를 지도하고, 당해 연도에 계속 사육할 수 있도록 지도

❑ 고능력 암소 수정란 이식 사업

○ 지원대상 : 암소검정사업에 참여하는 조합 중 생축장을 보유한 지역축협

* 2015년 한우암소검정사업 시행기관 중 2개소를 별도 선정

○ 지원기준 : 개소 당 50백만원

- 수정란(150/조합), 이식지원비, 질병검진비, 사료비 등

< 고능력 암소 수정란이식 사업대상 조합 선정계획 >

(단위 : 개소, 개)

구분	2015	2016	2017	누 계
지원조합	2	5	10	22
수정란 공급	300 (150/조합)	750 (150/조합)	1,500 (150/조합)	2,550

❑ 저능력 암소 조기 도태 인센티브 지원

○ 지원대상 : 한우암소검정사업 참여농가 관리암소 중 유전능력이 낮은 암소

○ 지원기준 : 유전능력이 낮은 것으로 통보받은 암소를 조기에 도태(2산 이하 비육출하)하는 경우 사육농가에 인센티브 지급(100천원/두)

○ 사업량 : 10천두(한우암소검정사업 참여 암소 5% 수준)

○ 지정방법 및 절차

- 대상우 지정기준 마련

· 농협 한우개량사업소는 시행기관별 혈통 및 번식자료와 시행기관별 등급판정 자료를 개량컨설팅기관에 제공하고 개량컨설팅기관에 유전능력평가를 요청

· 농협 한우개량사업소는 시행기관별로 저능력 암소 대상우를 통보

* 농협 한우개량사업소는 유전능력평가 자료와 번식성적 등을 바탕으로 저능력 암소 지정기준 마련

- 대상우 선정 : 시행기관은 해당 암소 사육농가에 능력평가결과와 2산 이하 조기 도태시 인센티브 지원 대상임을 통보('15.4월)

○ 저능력 암소 도태 인센티브 지원 농가 의무사항

- 해당 소가 비육·출하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사업 시행기관에 제출

  * 출하된 소가 번식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확인(송아지 생산)되는 경우 자금회수 및 사업불이익 조치

- 시행기관은 소속 농가의 저능력우 도태 인센티브 지원 대상 암소의 비육출하 근거자료를 농협 한우개량사업소에 제출

○ 저능력 암소 지정방법 및 세부사업시행 절차 : 별도시행

마.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액 기준

구분	사업물량	단가(천원)	사업비(백만원)
농가지도비	8,500호	130	1,105
암소검정비	10,000두	15	150
친자감정비	22,000조	30	660
개량컨설팅비	55개소	10,000	550
고능력암소 개량지원비	1,685두	200	337
고능력 암소 수정란이식 사업	2개소	50,000	100
저능력암소 조기도태 인센티브 지원	10천두	100	1,000

바. 자금배정 및 집행

❑ 자금배정

○ 주관기관은 매월 한우종합관리시스템 암소검정실적을 조사하여 사업비를 산출하고 분기별 소요예산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 한우개량사업소의 자금배정신청을 근거로 농협 축발기금사무국에 자금 배정

❑ 자금집행

○ 시행기관은 사업실적에 따른 농가지도비, 암소검정비, 친자감정비 및 개량컨설팅비 등을 주관기관에 반기별로 지급요청

○ 농협 한우개량사업소는 축발기금사무국에서 자금을 수령하여 시행기관에 지급

- 지역축협은 환으로, 그 외 관리기관은 지정계좌로 입금
- 주관기관은 연도 말에 시행기관과 사업비 정산 실시

○ 시행기관은 주관기관에서 수령한 보조금을 기타예수금으로 기표한 후 농가지도비와 암소검정비(초음파촬영비)는 해당과목으로 처리하고, 기타비용은 해당 기관에 무통장 입금

- 보조금 집행후 잔액은 주관기관에 반납

사.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 이행점검

○ 농림축산식품부는 시행기관의 사업추진 및 보조금집행 현황 등에 대해 현지점검을 실시

- 점검대상 : 한우암소검정사업 시행기관
- 점검일정 : 3년마다 1회 이상 현지방문 조사
- 점검반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축산과학원 및 농협 한우개량사업소
- 점검항목 : 사육현황, 암소검정현황 및 개량컨설팅 추진실적 등

❑ 사후관리

○ 시행기관 교육

- 주관기관은 시행기관 검정원을 대상으로 검정원 개량기술교육 및 세부추진계획 교육 실시
- 시행기관의 검정원 교체 등 요청 시 사업교육 실시

○ 사업계획 변경

- 주관기관은 시행기관 폐쇄, 실적부진 등의 사유로 시행기관의 사업물량을 변경하거나 선정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아 처리하고, 해당 시행기관 및 시·도, 시·군에 알림
- 시행기관은 지정농가가 시행기관에서 인정하는 사유로 변경·취소하고자 할 경우, 같은 농가 수로 농가를 변경·지정하고 주관기관에 보고

❑ 결과보고 및 정산

○ 주관기관은 한우암소검정사업의 분기별 사업실적을 해당 분기의 다음달 10일까지 국립축산과학원 및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15년 사업실적 및 정산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16.2월)

3. 기타사항

가.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종합평가

○ 평가 시기 : 시행기관의 전산자료에 따라 연도말 실시('15.11월)

○ 평가방법 및 배점 : 주관기관에서 세부평가계획을 수립·시달

○ 평가에 따른 환류 : 다음연도 시행기관 선정 및 사업비 차등 지원에 활용

❑ 한우암소검정농가 만족도 조사

○ 한우암소검정 참여농가의 사업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정책 수립 등에 자료로 활용

- 조사시기 : 현지점검 시

- 조사대상 : 암소검정참여농가에 대하여 시행기관별 3~5호 조사
- 조사방법 : 조사항목에 대한 설문조사

*** 대상선정, 설문조사 항목 등의 조사계획은 주관기관 자체 수립·추진**

○ 농협 한우개량사업소는 한우암소검정사업 만족도 조사결과를 국립축산과학원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15.12월)

❑ 종합유전능력분석 실시

○ 평가시기 : 시행기관의 전산자료에 의거 다음 연도 중 1회 실시

○ 평가방법 : 국립축산과학원은 평가팀을 구성하여 유전능력평가 실시

○ 평가에 따른 환류 : 개량컨설팅기관 표준화 등에 활용

나. 기타사항

○ 연도별 한우암소검정 참여농가 암소보유 기준

연도	2010~2012	2013~2017	2018~
12개월 이상 혈통관리 암소	3두 이상	5두 이상	10두 이상

○ 암소 초음파촬영비 지자체 및 농가 부담 추진

- 암소초음파촬영비 축산발전기금 보조(15천원/두) 이외의 부족분(15천원/두)에 대해 농가자부담 등으로 50%를 확보

○ 친자감정 결과 친자일치율이 낮은 시행기관에 대한 조치

- 친자일치율이 65% 이하인 시행기관은 차년도 사업대상에서 제외

○ 사업실적 평가 후 상위 60%인 시행기관은 계속사업으로 진행('16년 사업참여 신청서 제출)

다. 예고

○ 2016년 이후 암소 초음파촬영시 신체충실지수(BCS, Body Condition Score)를 기록하여 개량컨설팅기관에 제공하고, 개량컨설팅기관은 이를 활용

[붙임] 기관별·시기별 암소검정사업 세부업무내역

시기	주관기관	시행기관	협력기관	비고
12월	- 세부추진계획수립 - 시행기관(세부추진교육) - 사업마감 및 정산 결과보고 - 시행기관신청접수	<신규> - 농가참여 신청접수 - 신청용 친자감정 - 사업계획 작성 - 사업신청	<친자감정기관> -신청용친자감정실시 <개량컨설팅기관> - 사업계획협조	- 사업시행지침시달 (농림축산식품부) - 개량컨설팅기관 표준화작업완료 (국립축산과학원)
1~3월	- 시행기관지정통보 - 사업물량 배정			- 후대검정 교배 - 당대검정 참여
	- 검정원 기술교육	- 검정농가 지정통보	<개량컨설팅기관> - 검정자료분석 · 교육	
	- (초음파촬영교육)	- 발육성적조사 - 초음파촬영 - 고능력암소 선정	<초음파판독기관> - 초음파판독	
4~6월	- 1분기사업마감 · 평가		<초음파판독기관> - 초음파판독	- 후대검정참여
	- 사업점검	- 친자감정시료채취	<친자감정기관> - 친자감정실시 <개량컨설팅기관> - 검정자료분석 · 교육	
	- 사업점검	- 발육조사 - 초음파촬영	<초음파판독기관> - 초음파판독	- 개량컨설팅기관 워크숍 (국립축산과학원)
7~9월	- 2분기사업마감 · 평가	- 초음파촬영(20)	<초음파판독기관> - 초음파판독	- 후대검정교배 - 당대검정참여
	- (초음파촬영보수교육)	- 친자감정시료채취	<친자감정기관> - 친자감정실시 <개량컨설팅기관> - 검정자료분석 · 교육	
	- 사업점검	- 발육조사 - 초음파촬영	<초음파판독기관> - 초음파판독	
10~11월	- 3분기사업마감 · 평가	- 초음파촬영(20)	<초음파판독기관> - 초음파 판독마감	- 후대검정참여
	- 사업종합평가 - 사업만족도조사 실시 · 보고	- 발육조사 - 초음파촬영	<개량컨설팅기관> - 검정자료분석 · 교육	

* 시행기관은 매월 혈통관리, 발육조사, 도체성적조사 및 농가지도 실시

<서식 1>

한우암소검정사업 참여 신청서

(농 가 용)

1. 보조사업명 : 한우암소검정사업

2. 사업대상자 주소 :
성명 :

3. 사업의 목적

○ 한우 암소에 대한 혈통관리, 발육·생체육질 조사 및 유전평가로 암소의 유전능력 추정

○ 우량 암소의 계획교배 및 송아지생산과 저능력우 도태 유도로 암소개량집단 구축

○ 한우개량에 의한 생산성 향상으로 농가경쟁력 강화

4. 사업의 의무

○ 한우암소검정사업에 참여하는 개체는 지정 후 1년간 사육을 원칙으로 하며, 인공수정, 송아지생산 및 이동 등 사유발생 시 기간 내에 조합에 신고해야 함

5. 사업 기간 : 2015. 1. 1 ~ 2015. 12. 31

6. 한우암소검정사업 신청내역

순번	귀표번호	등록번호 (등록구분)	생년월일	현재 산차	부명호	어미	
						개체번호	등록번호

위와 같이 2015년도 한우암소검정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2015년 월 일

신청인 : ○ ○ ○ (인)

시행기관 ○○○ 귀하

<서식 2>

한우암소검정사업 참여 신청서

(시행기관용)

1. 보조사업명 : 한우암소검정사업

2. 사업 관리조합 주소 :
조합(사업단)명 :

3. 사업의 목적

○ 한우 암소의 혈통관리, 발육·생체육질 조사 및 유전평가로 암소의 유전능력 추정

○ 우량 암소의 계획교배 및 송아지생산과 저능력우 도태 유도로 암소개량집단 구축

○ 한우개량에 의한 생산성 향상으로 농가경쟁력 강화

4. 사업비 신청액 : **원**

○ 농가지도비 : 원(호)
○ 암소검정비 : 원(두)
○ 친자감정비 : 원(조)
○ 개량컨설팅비 : 원
○ 고능력암소지원 : 원(두)

5. 사업비 소요현황

구분	참여단위	총소요액	축발기금보조	지방비	시행기관부담	농가부담
농가지도비	호					
암소검정비	두					
친자감정비	조					
개량컨설팅비	-					
고능력암소지원	두					

6. 사업기간 : 2015. 1. 1 ~ 2015. 12. 31

7. 사업비 사용방법

○ 한우암소검정사업 세부추진계획에 따라 사업수행 및 사업비 집행

8. 붙임 : 한우암소검정사업 계획서

위와 같이 2015년도 한우암소검정사업에 의한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15년 월 일

시행기관 : ○ ○ ○ (인)

농협 한우개량사업소장 귀하

<서식 3>

한우암소검정사업 참여 통보서

1. 한우암소검정사업 지정내역

○ 축주내역

축 주	주소				
	성명		연락처	자택	
				이동전화	
참여두수	두		농가지도비 자부담	원	

○ 한우암소검정사업 참여내역

순번	귀표번호	등록번호 (등록구분)	생년월일	현재 산차	부명호	어미	
						개체번호	등록번호

2. 지정조건

○ 지정기간 : 2015. 1. 1 ~ 2015. 12. 31

○ 인공수정, 송아지생산 및 이동 등 사유발생시 기간 내에 시행기관에 신고

○ 한우암소검정사업 참여 개체는 지정 후 1년간 사육을 원칙으로 하고, 12~15개월 암소는 암소검정에 참여해야 함

○ 사업 세부내용 및 기타 사항은 시행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2015년도 한우암소검정사업 참여농가로 통지합니다.

2015년 월 일

시행기관 : ○○○ (인)

※ 본 지정통보서는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농가가 보관하고 1부는 농가의 수령확인인을 받아 시행기관에서 보관합니다.

농가 수령확인	
성 명	인

<서식 4>

한우 고능력 암소 선정 통보서

1. 한우 고능력 암소 선정내역

○ 사업대상 농가

축 주	주소				
	성명		연락처	자택	
				이동전화	

○ 한우 고능력 암소 선정내역

순번	귀표번호	등록번호 (등록구분)	생년월일	현재 산차	부명호	어미	
						개체번호	등록번호

2. 선정조건

○ 선정기간 : 2015. 1. 1 ~ 2015. 12. 31

○ **개량지원비**는 인공수정, 송아지생산 및 이동 등 사유발생 시 기간 내에 조합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지급되지 않습니다.

○ 고능력암소로 **지정된 개체는 계속사육을 권장하며, 개량지원비를 지급받은 후 매각(출하)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 세부내용 및 기타 사항은 시행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2015년도 한우 고능력암소 지정농가로 선정되어 통지합니다.

2015년 월 일

시행기관 : ○○○ (인)

<서식 5>

한우 고능력 암소 송아지 생산 신고 및 개량지원비 신청서

(농 가 용)

<table>
<tr><td rowspan="2">축가</td><td>주 소</td><td colspan="8"></td></tr>
<tr><td>성 명</td><td colspan="3"></td><td>전화</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2">고능력
암소</td><td>귀표번호</td><td>생년월일</td><td>등록
구분</td><td colspan="2">등록번호</td><td>최종
수정일</td><td>씨수소명</td><td>산차</td><td>분만일</td></tr>
<tr><td></td><td></td><td></td><td colspan="2"></td><td></td><td></td><td></td><td></td></tr>
<tr><td rowspan="4">송아지</td><td rowspan="2">송아지
귀표번호</td><td colspan="3">분만상황</td><td rowspan="2">지급
기준
금액</td><td colspan="4">사육 및 판매의향</td></tr>
<tr><td>성별</td><td>생시체중</td><td>분만상태</td><td>자가사육</td><td>시장판매</td><td>문전거래</td><td>판매시기</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colspan="3">개량지원비 신청액</td><td colspan="7">일금 원정(₩)</td></tr>
<tr><td colspan="3">입금계좌</td><td colspan="7">농협</td></tr>
</table>

※ 작성요령 : 송아지 생산 후 1개월령 이내에 작성(자가사육, 시장판매, 문전거래 등은 해당란에 ○으로 표시), 해당 사항이 없을 경우 공란으로 남김

위와 같이 한우 고능력 암소 송아지 생산 신고서를 제출하오니 개량지원비를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날인 또는 서명)

ㅇ ㅇ ㅇ 장 귀하

<서식 6>

한우암소검정사업 추진실적 보고(/4분기)

1. 사업 추진실적

세 부 사 업 명	단위	연간계획 (A)	(/4분기)까지		진 도(%)	
			계획(B)	실적(C)	C/B	C/A
○ 한우암소검정사업						
- 시행기관	개소					
- 농가	호					
- 참여두수	두					
- 암소검정두수	두					
- 친자감정두수	조					
- 고능력암소 지원	두					
- 고능력 암소 수정란 이식사업	개					
- 저능력우 도태 인센티브 지원	두					

2. 사업비 집행실적

(단위 : 천원)

세 부 사 업 명	사업 대상	사업량			사 업 비															
					축발기금			지방비			시행기관			농가자담			계			
		계획	실적	%	계획	실적	%	계획	실적	%	계획	실적	%	계획	실적	%	계획	실적	%	
○ 한우암소검정사업																				
- 농가지도비	호																			
- 암소검정비	두																			
- 친자감정비	조																			
- 개량컨설팅비	개소																			
- 고능력암소지원	두																			
- 고능력 암소 수정란 이식사업	개																			
- 저능력우 도태 인센티브 지원	두																			

※ 사업비내역 중 지방비, 시행기관 및 농가 자담 등 내역은 보조금 정산 시 보고

3 한우육종농가사업

1. 사업개요

가. 사업 목적

○ 보증씨수소 선발을 위해 국가단위 능력검정에 공시할 우량 수송아지를 안정적으로 확보

- 씨수소 생산용 암소의 능력검정, 유전능력평가, 선발 및 계획교배의 연쇄적 반복과정을 거쳐 유전적으로 우수한 경제형질을 지닌 한우 암소 모집단 구축

○ 한우 씨수소의 우수한 유전자 농가 공급을 통한 육량과 육질에 대한 생산성 향상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국제 경쟁력 확보

나.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제5조(개량목표의 설정), 제7조(가축의검정) 및 제47조(기금의 용도)

다.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년까지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이후
합 계	3,393	1,599	2,114	2,725	
- 보 조	3,393	1,599	2,114	2,725	
- 융 자	-	-	-	-	
- 지방비	-	-	-	-	
- 자부담	-	-	-	-	

라. 사업주관기관 : 농협 한우개량사업소

마. 사업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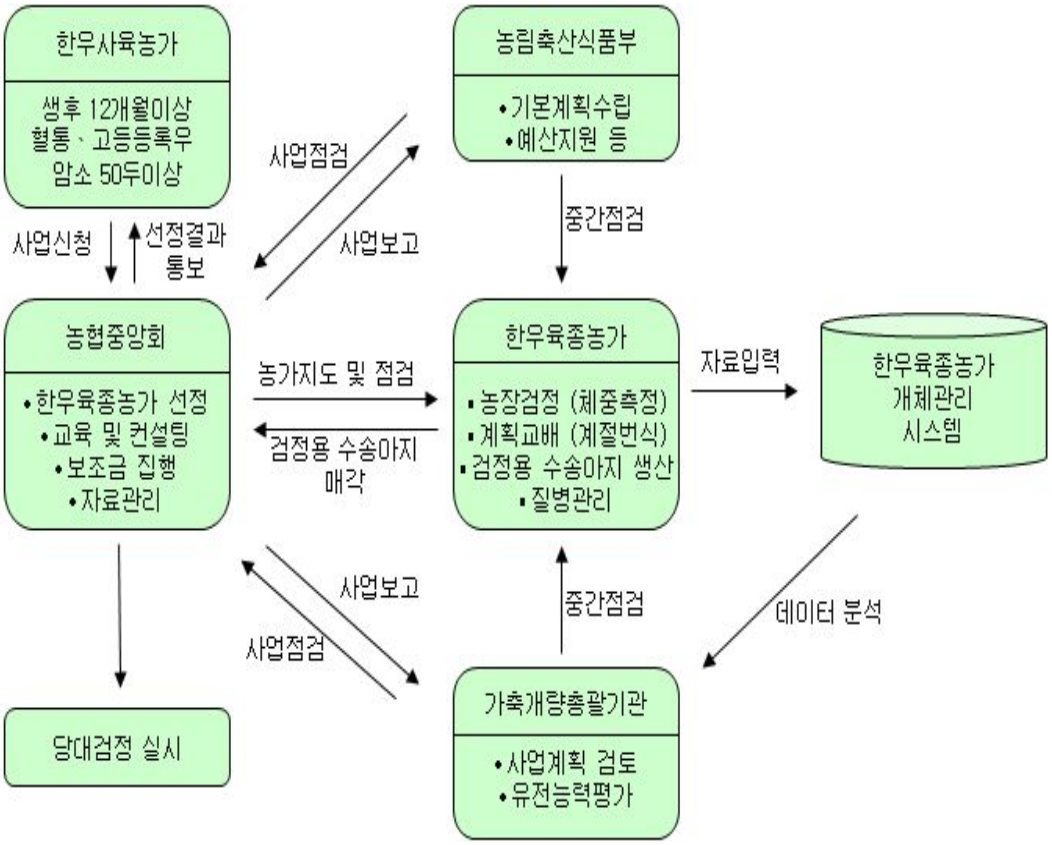

2. 2015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가. 사업대상 및 지원요건

❑ 사업대상

○ 한우육종농가(지역축협 생축장 포함) 및 한우육종센터(도 축산관련 연구기관으로 이하 '한우육종센터'라 함)로 농협 한우개량사업소가 지정한 농가(기관)

❑ 지원요건

○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축산업허가 또는 축산업등록을 한 농가

○ 생후 12개월령 이상 한우 혈통·고등등록 암소를 50두(한우육종센터 100두)이상 사육하며 계절번식을 실시

* **불가피한 사정으로 전 두수의 계절번식을 실시하지 못할 경우, 사전에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 사육하고 있는 12개월령 이상 모든 소가 신청일 기준으로 2개월 이내에 브루셀라병, 우결핵병, 요네병, 구제역 검진을 실시하여 음성판정(지역축협의 협조를 받아 질병검진 실시)을 받은 농가 및 한우육종센터

○ 체중측정기 설치가 가능한 장소를 보유한 농가 및 한우육종센터

○ 한우육종농가사업 계획과 의무사항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농가 및 한우육종센터

나. 대상자 선정방법 및 절차

❑ 사업신청단계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물량, 사업추진 방향 및 선정기준 등을 반영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농협 한우개량사업소에 시달('15.1월)

○ 농협 한우개량사업소는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추진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립축산과학원에 보고('15.1월)

- 사업목적, 농가 신청자격과 신청기간 및 사업참여신청서 작성과 제출기한 등

○ 농협 한우개량사업소는 세부추진계획을 지역축협 및 한우농가에 안내

○ 지역축협은 한우육종농가 신청농가의 자격기준을 검토한 후 질병검진 결과를 첨부하여 농협 한우개량사업소에 한우육종농가로 추천

○ 한우농가는 한우육종농가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역축협 또는 농협 한우개량사업소에 신청

- 신규 참여 한우육종농가 : 참여 희망농가 신청서 제출

〈 신규 참여 한우육종농가의 사업 신청 시 제출서류 〉

* 한우육종농가사업 신청서
* 농 · 축협이 작성한 신용조사서(한우육종센터는 제외)
* 한우암소 보유내역서
* 축산업등록증(서) 또는 축산업허가증(서) 사본
* 농가 최초 혈통등록우에 대한 종축등록증 사본(한우육종센터 제외)
* 체중측정기시설 설치장소 및 방역시설에 대한 사진 각 1매
* 보유한 모든 소(12개월 이상)에 대하여 시·도 가축위생시험기관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지원 포함)에서 발급한 질병항목별 검진결과통보서

❑ 신규 참여 육종농가 심사 및 선정방법

○ 한우육종농가 심사

- 농협 한우개량사업소는 국립축산과학원과 협의하여 3인 이상 5인 이하의 심사위원으로 육종농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위원 중 1인을 심사위원장으로 구성
- 심사위원회는 사업신청서와 제출된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선정기준에 의거 면접대상자를 선정

*** 구제역 발생 등 불가피한 사정 발생 시에는 면접 생략이 가능**

- 심사위원회는 면접결과를 바탕으로 현지심사 대상농가를 선정
- 현지심사는 심사기준에 의거 실시하며, 현지심사 결과 일정수준 미만의 점수를 얻은 농가는 사업계획에 관계없이 선정에서 제외

○ 한우육종농가 선정

- 현지심사 결과 상위 60%에 속하는 농가 중 도별 1순위 농가를 1차로 선정
- 1차 선정된 한우육종농가가 선정계획농가 호수에 미달된 경우 상위부터 선정계획 호수만큼 2차로 선정
- 농협 한우개량사업소는 심사위원회의 현지심사결과에 따라 한우육종농가를 선정한 후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립축산과학원에 보고하고, 지역축협과 해당 농가에 통보

다. 육종용 씨수소 · 씨암소 관리·운영

❑ 관리우 지정

○ 농협 한우개량사업소는 한우육종농가에서 계절번식에 참여하고, 친자감정이 완료된 12개월 이상 혈통・고등등록우를 관리우로 선정

❑ 계획교배

○ 한우육종농가는 농협 한우개량사업소와 협의하여 보증・후보씨수소에 대한 계획교배 실시

❑ 농장검정

○ 농장검정은 계절번식(계획교배)으로 관리우에서 생산된 송아지 중 친자감정된 송아지에 한하여 실시

- 암송아지는 6개월령 이전까지 외모조사 및 발육성적을 조사하고, 암소검정대상우를 선정하여 6개월령부터 12개월령까지 발육 및 육질자료(초음파생체단층촬영)를 조사
- 수송아지는 6개월령 이전까지 외모조사 및 발육성적을 조사하고, 당대・후대검정 대상우 심사에 참여

○ 한우육종농가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한우육종센터는 국립축산과학원의 사업승인을 받아 당대검정 자체실시 가능

❑ 질병검진

○ 한우육종농가는 연 1회 이상 농장 내 1세 이상 전 두수(수소는 생애 1회만 질병검진)에 대한 브루셀라병, 우결핵, 구제역, 요네병의 검진을 질병검진기관에 의뢰하고, 그 검진결과를 농협 한우개량사업소에 통보

- 질병에 감염된 경우 한우육종농가사업 중 계절번식, 농장검정을 제외한 모든 사업 중단(다만, 구제역 발생 시 육종농가 지정 취소)

라. 지원자금별 용도 및 지원형태

❑ 검정비

○ 자금용도 : 송아지, 암소검정우 및 관리우 사육에 필요한 사양관리비(사료, 첨가제, 시약 및 사양관리물품 등) 및 친자감정용 채혈비 등에 사용

○ 지원대상 : 계절번식에 참여한 관리우에서 생산된 친자감정 송아지 중 생시, 이유시(3개월령) 체중을 측정한 개체 및 암소검정(6개월령, 12개월령 체중측정 및 초음파촬영)에 참여한 개체로서 유전능력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 한우육종농가

- 다만, 신규 선정 한우육종농가의 관리우에 한하여 계절번식에 참여여부와 관계없이 선정된 해와 익익년의 1월말까지 생산된 송아지에 대하여 위의 기준에 따라 검정비를 지급

○ 지원기준

- 계절번식에 참여한 관리우가 생산한 송아지 중 친자가 확인된 개체로서 다음 기준에 따라 지원

· 생시, 이유시(3개월령) 체중측정(암, 수소) : 두당 100천원

· 6개월·12개월 체중측정 및 초음파촬영(암소) : 두당 200천원

* 농가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항으로 부득이하게 체중측정만 실시하고, 초음파촬영이 불가능할 경우 두당 100천원 지원

○ 지원방법 : 농협 한우개량사업소는 한우육종농가가 「서식 2」로 신청한 검정비의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지역축협을 통하거나 해당 한우육종농가에 현금(온라인 입금)으로 지급

○ 한우육종농가 의무사항

- 한우육종농가는 농협 한우개량사업소와 협의하여 보증·후보씨수소 정액을 사용하여 계절교배를 실시하고 수정기록을 작성·보관하여 정확한 혈통관리를 실시
- 송아지 분만 시 생시체중 측정 및 외모조사를 실시하고, 이유시 체중(3개월령), 6개월령 체중, 12개월령 체중을 측정하여 2주 이내에 전산시스템에 해당 자료 입력
- 혈통관리를 위해 친자감정 대상우의 샘플을 채취한 후 농협 한우개량사업소 및 친자감정기관에 제공
- 농협 한우개량사업소의 유전능력평가 결과, 당대검정용 수송아지로 선정될 경우 농협 한우개량사업소에 매각
- 한우육종농가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각종 조사(암소검정우 초음파촬영 및 관리우 전수조사 등)에 반드시 협조

❑ 우형기 설치비

○ 자금용도 : 체중측정 및 초음파생체촬영 시설 설치에 필요한 제반비용(보정틀, 체중측정기, 유도로)

○ 지원대상 및 기준

- 내구연한(10년)이 지나 교체가 필요한 한우육종농가의 우형기(보정틀 포함) : 호당 4,100천원 이내
- 농장후대검정 참여를 위해 우형기를 신규로 설치하는 농가 : 8,200천원 이내

○ 지원방법

- 지원대상농가 체중측정기, 보정틀 등을 설치 후「서식 3」으로 농협 한우개량사업소에 설치비를 신청
- 농협 한우개량사업소는 한우육종농가의 우형기 설치여부를 확인하고, 지원액 이내에서 실비용을 지역축협을 통하거나 해당 한우육종농가에 현금(온라인 입금) 지급

○ 우형기설치 농가의 사업의무

- 설치한 우형기, 보정틀, 유도로 유지 보수

❑ 씨수소선발 개량장려금

○ 자금용도 : 후보·보증씨수소 선발을 위한 우량 씨암소 관리 등

○ 지원대상 : 후보·보증씨수소로 선발된 소를 생산한 한우육종농가

○ 지원금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후보 씨수소	보증씨수소		
		하 : 0~20%이하	중 : 20%초과~80%이하	상 : 80%초과~100%
지원금액	10	30	40	50

* '12년까지 선발된 보증씨수소는 수송아지 매입 해당연도에 예고한 정액 판매대금의 일정비율(10%) 적용

○ 지원방법

- 농협 한우개량사업소는 씨수소 선발 후(후보씨수소 3월·9월, 보증씨수소 2월·8월) 개량장려금을 해당 씨수소를 생산한 한우육종농가에 지급

(다만, '12년까지 선발된 보증씨수소는 축발기금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매년 11월까지 해당 씨수소 정액판매액의 10%를 12월에 한우육종농가에 지급)

❑ 농장후대검정 자료조사비

○ 자금용도 : 농장후대검정 자료를 조사한 개체의 사양관리비 등으로 사용

○ 지원대상 : 농장후대검정우의 검정자료*를 제출한 후대검정 참여농가

* 검정자료 : 생시, 이유시(3개월령), 6, 12, 18, 24개월령 체중, 24개월령 초음파촬영

○ 지원기준

- 생시, 이유시(3개월령) 체중측정 : 두당 100천원
- 6, 12, 18, 24개월 체중측정, 24개월 초음파촬영 : 두당 400천원

* 농가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항으로 부득이하게 체중측정만 실시하고, 초음파촬영이 불가능할 경우 두당 300천원 지원

* 지정이 취소된 농장에서 후대검정우의 자료조사를 실시한 경우 자료조사비 지급

○ 지원방법 : 농협 한우개량사업소는 한우육종농가가 「서식 5」로 한우 농장후대검정 자료조사비를 신청할 경우, 개체 및 검정자료를 확인 후 해당 한우육종농가에 현금(온라인 입금) 지급

○ 한우육종농가 사업의무

- 한우육종농가는 농장후대검정 계획교배로 태어난 수송아지를 6개월령에 거세하고, 체중측정(생시, 이유시(3개월), 6, 12, 18, 24개월령, 출하시), 24개월령 초음파촬영 및 도체성적을 농협 한우개량사업소에 제공

마.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단위 : 두, 호, 백만원)

구 분		사업물량	사업비	비 고
검정비	생시, 이유시 체중측정우	5,700	570	5,700두×100천원
	검정참여우 (체중측정, 초음파촬영)	2,280	456	2,280두×200천원
우형기 설치비		10	41	10호×4,100천원
씨수소선발 개량장려금	보증씨수소	24	1,035	◦'12년까지 선발: 5두×35 천원, 10 천원×10% ◦신규선발 : 19두×40백만원 ◦지자체선발 : 2개소×50백만원
	후보씨수소	40	400	40두×10백만원
농장후대검정 우형기설치비		15	123	15호×8,200천원
농장후대검정 자료조사비	생시, 이유시 체중측정우	400	40	400두×100천원
	6, 12, 18, 24개월체중 및 초음파측정	150	60	150두×400천원
합 계			2,725	

바. 자금배정 및 집행

❑ 자금배정·집행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 한우개량사업소의 한우육종농가사업 자금배정 신청을 근거로 농협으로 보조금 배정

○ 한우육종농가 보조금 교부결정

- 기존 한우육종농가 : 농협 한우개량사업소는 전년도 사업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참여 농가를 선정하고 교부결정

- 신규 한우육종농가 : 농협 한우개량사업소는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류 및 현지심사를 거쳐 참여농가를 선정하고 교부결정

○ 농협 한우개량사업소는 선정된 한우육종농가와 보조금 교부조건에 관한 계약을 체결(다만, 당사자간 변경의사를 통보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1년씩 효력 연장)

- 기존 한우육종농가 : 전년도 12월
- 신규 한우육종농가 : 매년 5월(다만, 선정시기에 따라 변경 가능)

○ 보조금 지급은 지역축협을 통하거나 직접 한우육종농가에 지급

❑ 지자체 한우육종센터 개량장려금

○ '14년도에 선발된 보증씨수소를 생산한 한우육종센터는 보증씨수소선발 개량장려금 사용(검정비용으로 한정)에 관한 '15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고, 보조금 교부 및 자금배정을 별도로 신청('15.1월)

- 지원액 : 50백만원/개소

자.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 이행점점 및 사후관리

○ 농협 한우개량사업소는 한우육종농가별로 암소의 검정자료를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농가 지도 및 점검 실시

- 농협 한우개량사업소는 한우육종농가를 연 2회 이상 방문하여 관리우 현황 및 암소검정우의 초음파생체자료를 수집
- 농협 한우개량사업소는 분기별 한우육종농가사업 실적을 해당 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국립축산과학원에 보고하고, 한우육종농가 성적을 종합 분석하여 농가에 제공

○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립축산과학원, 농협 한우개량사업소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한우육종농가사업 추진실적을 점검

- 점검대상 : 한우육종농가
- 점검일정 : 연 1회 이상
- 점검항목 : 친자정확도, 관리우 보유현황, 인공수정 및 송아지 생산두수, 검정실적 및 검정자료 관리

○ 한우육종농가 중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고 그 농가가 보유한 관리우는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

- 한우육종농가사업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농가
- 사업실적 부진으로 한우육종농가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농가
- 지침을 위반했거나,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농가
- 정당한 사유 없이 당·후대검정사업 참여를 거부하는 농가
- 계획교배용으로 공급된 정액을 사업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농가

❑ 결과 및 정산보고

○ 결과보고

- 농협 한우개량사업소는 한우육종농가사업 추진실적을 분기말 다음 달 20일까지(서식7)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립축산과학원에 보고

○ 정산보고

- 농협 한우개량사업소는 한우육종농가 사업비 정산내역을 연도 말에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3. 기타사항

가.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평가

○ 농협 한우개량사업소는 매년 한우육종농가 사업의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이 부진한 농가는 사업에서 제외함으로써 한우육종농가의 사업부실 방지와 사업성과 극대화를 도모

○ 평가방법

- 평가기관 : 농협 한우개량사업소
- 평가기간 : 전년도 11월부터 금년도 10월말을 원칙으로 함
- 평가대상 : '14년 선정된 농가를 제외한 한우육종농가
- 평가항목 : 친자정확도, 인공수정 및 송아지생산두수, 암송아지 생산 대비 암소검정우 참여율, 관리우 보유현황 및 검정원 협조여부 등

❑ 사업환류

○ 사업부진 한우육종농가의 사업 시정 또는 지정 취소

- 평가에 따른 조치방법

평가점수	제 제
70점 이하	경 고
70점 초과 80점 이하	주 의

- "주의 → 경고 → 지정 취소" 순으로 하며, "주의" 조치가 2년 연속이면 "경고" 조치하고 "경고" 조치 후 다음 해에 "주의" 이상 평가를 받은 한우육종농가는 지정을 취소

나. 기타사항

○ 지정 취소로 한우육종농가수가 100호 미만이 될 경우 취소된 농가호수 만큼 농장후대검정전문농가 중에서 우선 선정

<서식 1>

한우 육종농가 신청서

(농가용)

1. 사업신청자

성 명	(인)	축산업 등록번호	
우사소재지			
집주소		전화번호 (휴대번호)	

2. 일반현황

한우 사육 현황 (두)	가임암소(1세 이상)					수 소		
	일반우	기초 등록우	혈통 등록우	고등등록우	계	거세	비거세	계

축사 기타	번식우사	비육우사	체중측정장소	방역시설	별도의 분만우사(방)
	동 평	동 평	(보유여부)	(보유여부)	(보유여부)

조사료 재배면적(평)	논면적	초지	사료포	기타	**HACCP인증**
	평	평	평		(인증, 미인증)

3. 첨부서류

- ○ 농·축협에서 작성한 서식 제2호 서식 신용조사서
- ○ 서식 제3호 서식 한우 암소 보유내역서
- ○ 축산업 등록증(서) 사본
- ○ 농가 최초 혈통등록우에 대한 종축등록증 사본
- ○ 체중측정기시설설치장소 및 방역시설에 대한 각각의 사진
- ○ 질병검진항목에 대한 검진결과통보서
- ○ **HACCP인증을 받은 농가는 HACCP 인증서 사본 제출**

위와 같이 한우육종농가 지정을 신청합니다.

2015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및 서명)

농협 한우개량사업소장 귀하

<서식 2>

한우육종농가 검정비 신청서

1. 신청자

성 명	(인)	주소	
축산업등록번호		전화	
지급계좌번호	_____ 농협(은행) :		

2. 관리우 신청두수 및 금액 : 두(원)

3. 관리우 신청내역

순번	관리우 개체식별번호	씨수소명	송아지 개체식별번호	산차	성별	생년 월일	(대리모)	지급대상 확인

※ 대상우확인란은 사업주관기관이 대상여부를 확인하고 표기

※ 신청대상우 및 자료조사내역이 많은 경우 첨부하여 제출
(전산자료 출력가능)

※ 쌍태인 경우 관리우 1두를 기준하여 지급

※ 관리우의 송아지에 대한 자료조사 내역 : “별도양식”

위와 같이 한우육종농가 검정비를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일 : 2015년 월 일
신청인 : (날인 또는 서명)

농협 한우개량사업소장 귀하

<서식 3>

한우육종농가 우형기 설치비 신청서

1. 신청자

성 명	(인)	주소	
축산업등록번호		전화	
지급계좌번호	_____ 농협(은행) :		

2. 신청금액 : 원

3. 육종농가우형기 설치 비용 산출내역

품목	규격	단가	수량	금액

※ 외부에 의뢰하여 설치할 경우 외부사업자의 청구금액 및 청구금액 산출내역을 첨부(외부에 의뢰한 경우 사업자번호가 있어야 하며, 없는 경우 농가에서 자체 공사한 것으로 간주)

※ 농가에서 자체 공사한 경우 품목에 대한 증빙서(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첨부

※ 품목이 많은 경우 산출내역을 첨부하여 제출

※ 설치전과 설치 후 사진을 첨부하여 제출

위와 같이 한우육종농가 우형기 설치비를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일 : 2015년 월 일

신청인 : (날인 또는 서명)

농협 한우개량사업소장 귀하

<서식 4>

한우 육종농가 질병검정비 신청서

1. 대상농가

성 명	(인)	주소	
축산업등록번호		전화	

2. 신청두수 및 금액 : 두(원)

3. 질병검진우 내역

순번	개체식별번호	생년 월일	질병검진항목				질병 검진비	채혈비
			브루셀라	우결핵	요네	구제역		
비고	계좌번호 :							

※ 질병검진항목에는 해당질병검진항목의 질병검진 여부를 기록

※ 신청대상우가 많은 경우 신청대상우내역을 첨부하여 제출

※ 질병검진기관에서 발행한 질병검진결과 및 지급관련비용 서류 첨부

위와 같이 한우육종농가 질병검진비를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일 : 2015년 월 일

청구자 : (날인 또는 서명)

농협 한우개량사업소장 귀하

<서식 5>

한우 농장후대검정 자료조사비 신청서

1. 대상농가

성 명	(인)	주소	
축산업등록번호		전화	

2. 신청두수 및 금액 : 두(원)

3. 검정우 내역

순번	개 체 식별번호	생년 월일	부	모	
				종축등록번호	개체식별번호
비고	계좌번호 :				

※ 체중(생시, 이유시(3개월), 6, 12, 18, 24개월령) 내역을 별도 첨부하여 제출

위와 같이 농장후대검정 자료조사비를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일 : 2015년 월 일

청구자 : (날인 또는 서명)

농협 한우개량사업소장 귀하

<서식 6>

발급번호 : 2015-　　호

한우 육종농가 (후보 · 보증)씨수소 선발 확인서

1. 생산농가

성　　명		주소	
축산업등록번호		전화	

2. (후보·보증)씨수소 선발내역

순번	개체식별번호	당소명호	종축등록번호	생년월일	매입일	선발일 (차수)	씨수소 명호	매입시 축주명

* 씨수소 당대 또는 후대검정성적 붙임

위와 같이 한우육종농가에서 생산된 수송아지가 (당대·후대)검정을 거쳐 (후보·보증)씨수소로 선발되었기에 이를 확인합니다.

2015년　　월　　일

농협 한우개량사업소장 (인)

<서식 7>

한우육종농가사업 추진실적 보고(/4분기)

1. 사업 추진실적

세 부 사 업 명	단위	연간계획 (A)	(/4분기)까지		진 도(%)	
			계획(B)	실적(C)	C/B	C/A
①한우육종농가 ○ 육종농가 선정 ○ 육종농가관리두수	호 두					

2. 사업비 집행실적

(단위 : 천원)

세 부 사 업 명	사업 대상 (호,개소)	사업량			사 업 비											
					축발기금			농협			자담 등			계		
		계획	실적	%	계획	실적	%	계획	실적	%	계획	실적	%	계획	실적	%
①한우육종농가 ○ 검정비 ○ 우형기 지원																

※ 사업비 내역 중 농협 및 농가자담 등 내역은 보조금 정산시 보고

4 한우암소개량센터 운영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 초우량 한우 암소의 유전자원 확보로 우수한 검정용 수송아지를 생산하여 한우 씨수소의 유전능력 제고

- 한우 사육농가에 우수 수정란을 공급하여 육량과 육질 생산성을 향상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 및 국제 경쟁력 확보

○ 능력이 우수한 한우암소의 유전적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우수 수정란 생산·공급 체계 구축하고 기관간 수정란 관련 기술 표준화

나.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제5조(개량목표의 설정), 제7조(가축의검정) 및 제47조(기금의 용도) 등

다.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년까지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이후
합 계		547	547	423	
- 보 조 - 융 자 - 지방비 - 자부담		547	547	423	

* 사업비는 한우능력검정사업에 포함

라. 사업주관기관

❑ 사업주관기관 : 농협 한우개량사업소

❑ **협조기관**

○ 도 축산관련연구기관 : 공란우 선발 및 우수 수정란 생산·공급

○ 축산물품질평가원 : 농가의 도축성적 제공

○ 국립축산과학원 : 유전능력 평가 및 고능력 암소 발굴·선발

(축산물품질평가원자료)

마. 사업추진체계

❑ **운영체계 : 농협 한우개량사업소 - 도 축산기술연구소 연계**

○ 유전능력평가를 통한 우수 암소 선발 및 활용체계 구축

○ 각 사업기관별로 수정란 생산용 우수 암소집단 유지 및 선발이용

❑ **기관별 역할**

○ 센터 운영 총괄 : 농협 한우개량사업소

○ 수정란 생산 및 공급 : 농협 한우개량사업소, 도 축산기술연구소

* 우량암소 보유농가의 수정란 생산 및 이식 지원(10호 x 2두/년)

○ 수정란 이식 : 농협 한우개량사업소, 도 축산관련연구기관, 한우 농가, 공란우 제공 농가 및 축협 생축장 등

❑ **암소개량센터 운영규모**

○ 공란우 60두 내외

- 농협 한우개량사업소 자체 확보 50두, 외부 10두

❑ **수정란 네트워크 구축**

○ 농협 한우개량사업소, 도 축산관련연구기관간 수정란을 공유하는 유전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수정란이식으로 생산된 개체들의 능력검정 및 우량암소 확보에 활용

○ 농협 한우개량사업소와 도 축산기술연구소에서 공급한 수정란의 이력 및 참여농가별 개량목표 설정 정보 제공

- ① 능력검정 성적과 혈통에 근거한 육종가 추정 → ② 네트워크 참여기관 및 농장 간 공유 → ③ 농장별 육종 목표에 근거한 수정란 공급 → ④ 능력검정 및 자료 취합 → ⑤ 우수 공란우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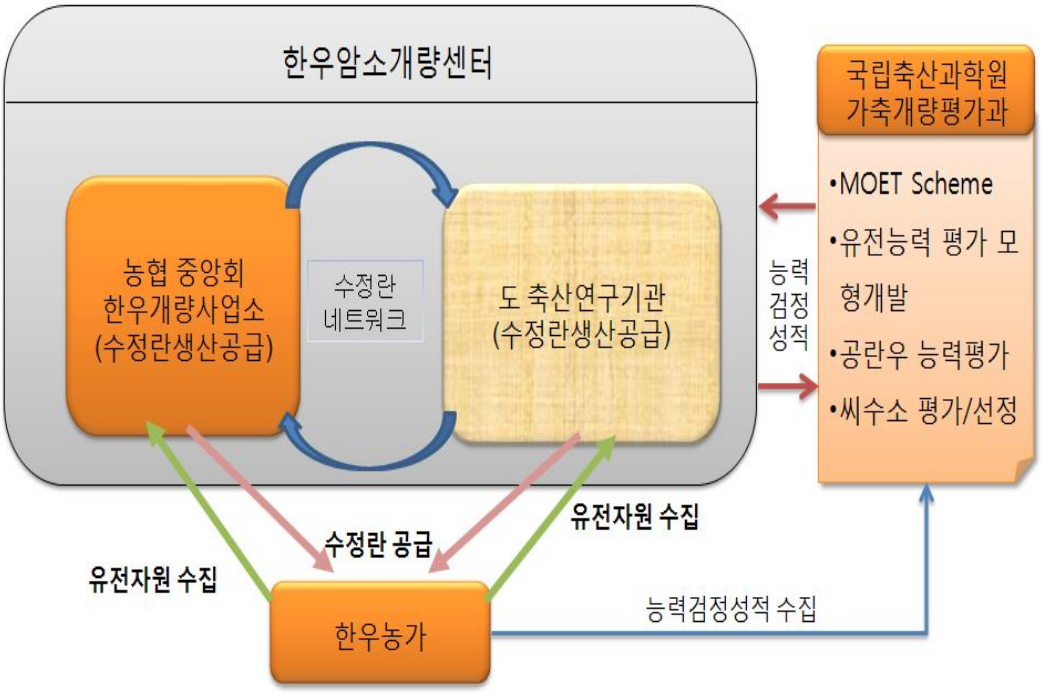

< 한우암소개량센터 운영체계도>

2. 2015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가. 사업대상 및 지원요건

❑ **사업대상자** : 농협 한우개량사업소

❑ **지원요건** : 네트워크용 수정란 생산을 위한 유전능력이 우수한 우량암소 선발 및 수정란을 생산하고 공급할 수 있는 기관

나. 지원자금의 용도

○ 공란우 채란 및 체내 인공수정 등에 소요되는 약품비, 수정란 관리비

○ 한우암소개량센터와 수정란 네트워크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다. 사업추진내용

❑ 우량 암소집단 구축

○ 농협 한우개량사업소 자체 보유축에서 유전능력의 상위 10% 이내에서 공란우 선발(50두 규모)

- 도 축산관련연구기관 자체 보유축 중 우수개체 일부 활용

○ 농협 한우개량사업소는 축산물품질평가원의 도체성적 등을 활용하여 특정형질이 우수한 우량암소를 외부에서 확보하고 이를 수정란 생산에 활용(10두 규모)

❑ 수정란 생산 및 공급

○ 농협 한우개량사업소 및 도 축산관련연구기관은 선발한 우량 암소에서 신선·동결 수정란 생산 : '15년 1,150개

○ 농협 한우개량사업소가 정한 세부추진계획에 따라 일반농가에 수정란 공급 : '15년 1,000개

- 공급 형태 : 신선란(사전예약제), 동결란(수시)

  * 수정란 이식기술 보유, 교육 여부 등을 확인 후 공급

  * 농협 한우개량사업소에서 사전예약을 위한 수정란 이력시스템 운영

- 수정란 공급가격 : 250천원('14년 판매단가)

  * 수정란 공급수수료 : 수정란 판매금액 7%

- 공급실적에 따른 회계처리 : 기관별 수익계정

<연차별 수정란 생산 및 판매계획>

(단위 : 개)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농협 (한우개량사업소)	750	975	1,150	1,885	3,060	3,310
도 축산관련연구기관	-	-	-	100	120	140
계	750	975	1,150	1,985	3,180	3,450

* 수정란 공급물량은 농협 한우개량사업소에서 조정 가능

○ **수정란 이식**

- 농협 한우개량사업소(수란우 100두)와 도 축산관련연구기관의 보유축에 자체 이식

○ 농가보유 고능력 암소를 이용하여 수정란을 생산할 경우 생산량 중 50%는 센터에서 인수, 50%는 농가에 이식 지원

- 지원농가수 : 10호×2두/년

- 농협 한우개량사업소는 농가 수정란 지원사업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추진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립축산과학원에 보고

❑ **지역축협 생축장 우량 송아지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고능력 암소 수정란 이식 지원**

○ 목적 : 지역 생축장 우량 암소집단 구축 및 우량 송아지 농가분양

○ 사업대상 : 수정란이식 암소 공급사업을 실시하는 계절번식이 가능한 사업장(생축장) 2곳

라.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액 기준 : 당해 연도 가축개량사업 보조금지출계획서와 보조금 교부조건에 의함**

마. 자금배정 및 집행

○ 매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한도배정을 승인 받은 후 농협중앙회 축발기금사무국에서 보조금을 수령하여 사업비 집행

바.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 이행점검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매년 1회 이상 한우암소개량센터 사업을 점검하고 점검시 확인된 문제에 대해 국립축산과학원과 협력하여 개선

❑ 사후관리

○ 농협 한우개량사업소 수정란 이력시스템에 수정란 생산, 이식, 분만에 관한 정보를 정확히 기록, 관리

○ 공란우 이용 연한 : 수정란 생산이 어려울 경우 도태

○ 외부에서 매입한 우량 암송아지는 능력검정을 마친 후 공란우 선발여부 결정

○ 우량 송아지 생산 시 친자감정을 위한 DNA 시료 보관 유도

- 공란우 DNA시료를 채취·보관하여 향후 송아지 친자감정 지원
- 씨수소는 이미 분석되어 있는 정보를 활용

○ 우수한 수정란의 정확한 생산과 이식을 통한 수태율 향상을 위해 정기적인 교육 실시

❑ 결과보고

○ 농협 한우개량사업소는 수정란 생산, 공급 실적을 분기말 다음 달 10일까지 국립축산과학원에 보고하고, 국립축산과학원은 관련 자료를 취합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3. 기타사항

가. 도 축산관련연구기관 수정란 공급센터 구축 지원

○ 농협 한우개량사업소는 도 축산기술연구소(암소 유전능력평가가 가능한 연구소) 보유축 상위 10% 이내 암소에서 생산한 일정량의 수정란을 교환, 고능력 암소집단 구축 지원

○ 기관 간 수정란 기술 표준화를 위한 심포지움 개최(1회/년)

나. 암소능력검정 시스템 구축 및 평가방법 도입

○ 수정란 이식 송아지의 유전능력평가로 고능력 암소 발굴 기여

○ 우량 암소 발굴을 통한 Elite-cow 집단 계통조성

다. 수정란 생산량 증가를 위한 신기술 도입

○ 생체난자흡입술(OPU)을 이용한 수정란 생산관련 기술 개발

- 개발필요성 : 수정란 수요량 증가에 따른 생산량 확대
- 필요시설 : 현 시설 이용('14년 기반구축)

○ 기대효과

- 수정란 생산기간 단축 및 수정란 생산량 증대
- 생체난자흡입술(OPU) 체외수정란의 수정란 이식을 통한 당대 검정용 송아지 생산

<서식 1>

한우암소개량센터 사업 추진실적 보고(/4분기)

1. 사업 추진실적

세 부 사 업 명	단위	연간계획 (A)	(/4분기)까지		진 도(%)	
			계획(B)	실적(C)	C/B	C/A
○ 한우암소개량센터 - 공란우 선발 - 수정란 생산 - 수정란 공급	 두 개 개					

2. 사업비 집행실적

(단위 : 천원)

세 부 사 업 명	사업 대상	사업량			사 업 비															
					축발기금			지방비			농협			자담 등			계			
		계획	실적	%	계획	실적	%	계획	실적	%	계획	실적	%	계획	실적	%	계획	실적	%	
○ 한우암소개량센터	두																			

※ 사업비내역 중 지방비, 농협 및 농가 자담 등 내역은 보조금 정산시 보고

MEMO

MEMO

MEMO

MEMO

젖 소 개 량

5 젖소(씨수소) 개량사업 지원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 **젖소의 혈통등록, 능력검정, 유전능력평가, 선발 및 계획교배의 반복과정을 거쳐 유전적으로 우수한 경제형질을 지닌 종축으로 개량하고 그 개체의 능력을 널리 이용**

○ 유전적 능력이 우수한 보증씨수소를 선발하여 우량정액을 생산·공급하고, 순종 개량방법으로 젖소능력을 향상

❑ **FTA를 대비하여 젖소의 생산성 향상 및 품질 고급화로 농가소득 증대 도모**

나.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제5조(개량목표의 설정), 제7조(가축의 검정) 및 제47조(기금의 용도) 등

다.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년까지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이후
합 계	69,954	7,295	7,526	9,024	
- 보 조	59,313	6,159	6,324	7,689	
- 융 자	-	-	-	-	
- 지방비	-	-	-	-	
- 자부담	10,641	1,136	1,202	1,335	

* 자부담은 농협 인건비 부담액임

* '14, 15년도 보조금은 자산취득비 포함

라. 사업주관기관 : 농협 젖소개량사업소

마. 사업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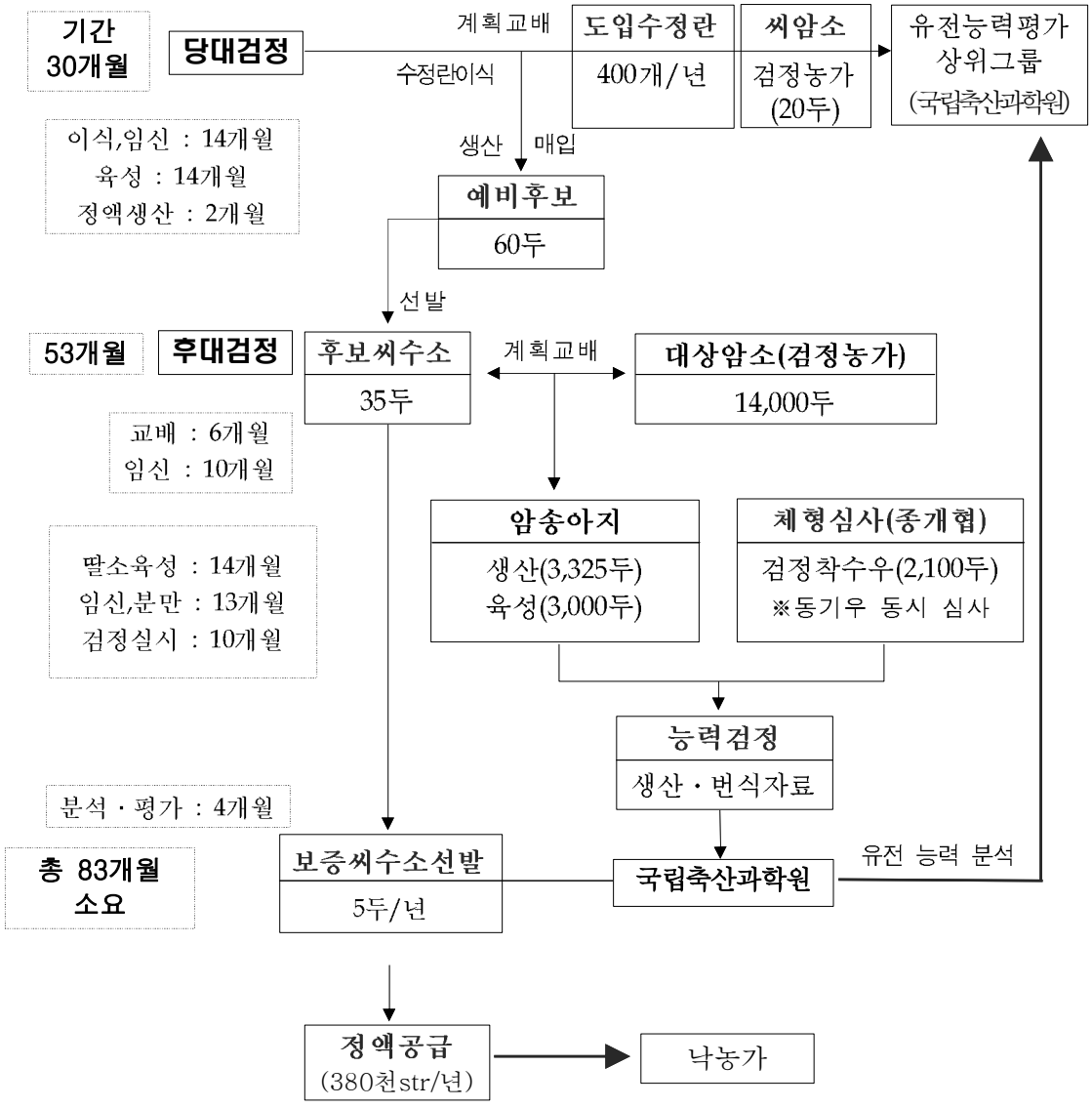

2. 2015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가. 사업대상 및 지원요건

❑ **사업대상 : 농협 젖소개량사업소**

❑ **지원요건**

○ 축산법에 따른 가축개량기관 및 종축검정기관으로 당·후대검정 사업을 실시하여 우량보증씨수소를 선발하고, 우량 씨수소의 정액을 생산·공급할 수 있는 기관

나.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젖소능력검정사업에 소요되는 운영비 및 인건비 일부 보조 지원

○ 젖소정액 생산·공급

○ 검정사업(당대검정 및 후대검정)을 통하여 보증씨수소 선발

○ 외국산 보증씨수소 도입 등 국가자산의 취득 및 유지 관리

다. 지원형태 및 사업내용

❑ **자금의 재원** : 축산발전기금

❑ **지원내용** : 우량 보증씨수소 선발 및 정액생산·공급에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비

❑ **사업 내용**

〈 당대검정 〉

○ 도입한 고능력 수정란을 국내 청정육종농가 암소에 이식하고 생산된 송아지 중 수송아지(3~7개월령)를 예비 후보씨수소로 확보

- 청정육종농가에서 질병검진 및 심사 후 매입

○ 예비후보씨수소의 당대검정기록, 선대능력, 외모심사 점수, 발육상태, 정액 성상 등을 국립축산과학원에 제출하고, 국립축산과학원은 가축개량협의회 협의를 거쳐 후대검정에 공시할 후보씨수소 선발

〈 후대검정 〉

○ 유우군능력검정농가 중 후대검정 참여농가의 교배암소에 후보씨수소 두당 400두(800str 내외) 이상 교배

- 역할 : 청정육종농가에서 생산한 씨수송아지의 정액을 제공받아 후대검정딸소를 생산하고 유전평가를 위한 검정자료 생성
- 자격 : 유우군능력검정사업 참여농가 중 미경산우를 포함한 전체 암소 중 부모를 아는 개체의 비율이 70% 이상인 농가
- 신청방법 : 후대검정 참여자격 농가 통보 → 사업참여 신청(온라인) → 사업추진

○ 생산된 딸소의 등록 및 능력검정 실시

○ 생산된 딸소 및 동기군에 대한 외모심사 실시

○ 농협 젖소개량사업소는 유우군능력검정 결과를, 한국종축개량협회는 혈통정보와 외모심사 성적을 국립축산과학원에 제출

○ 국립축산과학원은 국가단위 젖소 유전능력평가를 실시한 후 가축개량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증씨수소 선발

○ 한국형 보증씨수소 연차별 선발계획

연 도	'13	'14	'15	'16	'17
선발두수	2	2	3	3	5

〈 젖소정액 생산 및 공급 〉

○ 농협 젖소개량사업소는 전국 사육규모, 인공수정실적 등을 바탕으로 정액수요를 예측하고 재고상황 및 보증씨수소 수급계획을 면밀히 분석하여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정액을 생산

○ 생산된 정액은 정액성상 및 활력 등을 매일 검사하고, 보관분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품질검사 실시

○ 생산된 정액은 전국의 수요를 감안하여 배분, 판매직원을 통하여 농가 및 인공수정사 등에게까지 안전하게 공급

○ 농가 등에 공급되는 정액은 수시로 공급단계별 품질검사, 수태율, 비정상 송아지(유전적 결함 등) 생산여부 등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민원발생 방지

〈 보증씨수소 도입 〉

○ 농협 젖소개량사업소는 국내 정액수급상황을 고려하여 도입두수를 정하고 해외 유전능력 평가자료 검토 및 현지확인을 통해 도입 대상우를 선정하여 관련 자료를 국립축산과학원에 제출

○ 국립축산과학원은 농협 젖소개량사업소에서 제출한 도입 대상우의 유전능력 평가자료 등을 검토한 후 가축개량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증씨수소 선발

〈 기타 〉

○ 농협 젖소개량사업소는 구체적인 검정계획 등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추진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립축산과학원에 보고

라.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액 기준** : 해당 년도 가축개량지원 사업 보조금지출계획서와 보조금 교부조건에 의함

마. 자금배정 및 집행

❑ 근거 규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과「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등을 따름

❑ 절차

○ 농협 가축개량원 젖소개량사업소는 매월 농림축산식품부에 지출한도 배분을 요청하고 승인을 받은 후 농협 축발기금사무국에서 보조금을 수령하여 인건비, 운영비 등 사업비 집행

○ 자금집행 단계

'15년 보조금 교부요청(1월)	교부결정 통보	월별 지출한도 배분 요청	월별 지출한도 배정	자금집행
농협 (젖소개량사업소)	농림축산 식품부	농협 (젖소개량사업소)	농림축산 식품부	농협 (젖소개량사업소)

바.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 사후관리

○ 농협 젖소개량사업소는 자체기준을 정하여 젖소 씨수소 및 정액생산 관리 철저

- 보증씨수소 및 후보씨수소 관리를 철저히 하고, 질병발생으로 도태되지 않도록 질병검사 강화 등 조치를 취할 것
- 한국형 젖소 씨수소 정액생산 관리방안 마련·운영
  - · 적정 관리기간 설정 및 운영으로 무분별한 장기간 사육 방지
  - · 질병 등으로 인한 사고 등 대비 적정 재고관리
  - · 사고축 발생에 대비한 위험보장 장치 마련
  - · 국내산 정액 판매 활성화 방안 마련 및 시행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

○ 국립축산과학원장은 젖소개량사업 추진사항을 점검 및 지도

❑ **결과보고 및 정산**

○ 실적보고 : 농협 젖소개량사업소 → 국립축산과학원 → 농림축산식품부

○ 정산보고 : 농림축산식품부 및 축발기금사무국에 보고

보 고 사 항	보 고 기 한	서 식
○ '15년 젖소능력검정 추진실적	매분기말 익월 말일까지	<서식 1>
○ 정산보고	(익년도 2월말까지)	자체서식

3. 기타사항

가.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평가

- 목적 : 농협 젖소개량사업소가 추진한 검정사업 및 젖소정액 생산·공급사업 실적을 평가하여 젖소개량사업의 사업부실 방지와 사업성과 극대화를 도모
- 평가기간 :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를 원칙으로 함
- 평가대상 : 젖소 당·후대검정, 정액생산・공급사업
- 평가항목 : 검정사업(후보우선발두수, 후대검정두수, 보증씨수소 선발두수), 젖소 정액판매사업

○ 환류

- 선발 및 도입된 젖소 보증씨수소의 농가선호도 및 개량 기여도 평가 결과를 다음 차수 선발 및 도입에 반영
- 우수한 젖소정액 공급으로 농가 만족도 제고 및 국내 젖소 개량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강화
- 유량, 유단백 등 젖소 유전형질 개량추세를 분석하여 낙농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

<서식1>

젖소 정액생산·공급사업 추진실적 보고(/4분기)

1. 사업 추진실적

세 부 사 업 명	단위	연간계획 (A)	(/4분기)까지		진 도(%)	
			계획(B)	실적(C)	C/B	C/A
가. 후보씨수소 확보						
○ 수정란 도입	개					
○ 수정란 이식	〃					
○ 씨수송아지 입식	두					
나. 후대검정						
○ 후보씨수소 선발	두					
○ 암소 선정	〃					
○ 딸소 생산	〃					
○ 검정두수	〃					
○ 보증씨수소 선발	〃					
다. 정액생산 공급						
○ 씨수소 사육	두					
- 보증씨수소	〃					
- 후보씨수소	〃					
○ 씨수소 도입	〃					
- 보증씨수소	〃					
○ 정액 생산	천str					
- 보증씨수소	〃					
- 후보씨수소	〃					
○ 정액 공급	〃					
- 보증씨수소	〃					
- 후보씨수소	〃					

2. 사업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명	축발기금			농협			계		
	연간 계획	실적	%	연간 계획	실적	%	연간 계획	실적	%
합계									
○ 젖소개량									
○ 자산취득비									

6 유우군능력검정사업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 **젖소 암소(후대검정우 포함)의 산유량, 유지율, 유지량 및 기타 유성분 등의 생산능력과 번식능력을 조사하여 유전능력 평가를 하고 농가의 개량을 촉진**

○ 암소별 능력평가 정보를 바탕으로 저능력우 도태를 유도하고 맞춤형 씨수소 계획교배를 지원함으로써 농가단위 암소개량을 지원

❑ **씨수소 개량과 함께 농가 젖소개량에 의한 생산성 제고로 농가 소득 증대와 국제 경쟁력 강화**

나.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제5조(개량목표의 설정), 제7조(가축의 검정) 및 제47조(기금의 용도)

다.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년까지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이후
합 계	94,069	9,367	9,367	9,367	
- 보 조	40,606	1,939	1,939	1,939	
- 융 자	-	-	-	-	
- 지방비	(1,684)	(232)	(232)	(232)	
- 자부담	(51,779)	(7,196)	(7,196)	(7,196)	

라. 사업주관기관

❑ 사업주관기관 : 농협 젖소개량사업소

○ 검정소(조합) : 지역축협·품목축협 및 한국종축개량협회

❑ 협조기관

○ 국립축산과학원 : 국가단위 유전능력평가

○ 한국종축개량협회 : 종축 혈통등록 및 선형심사

마. 사업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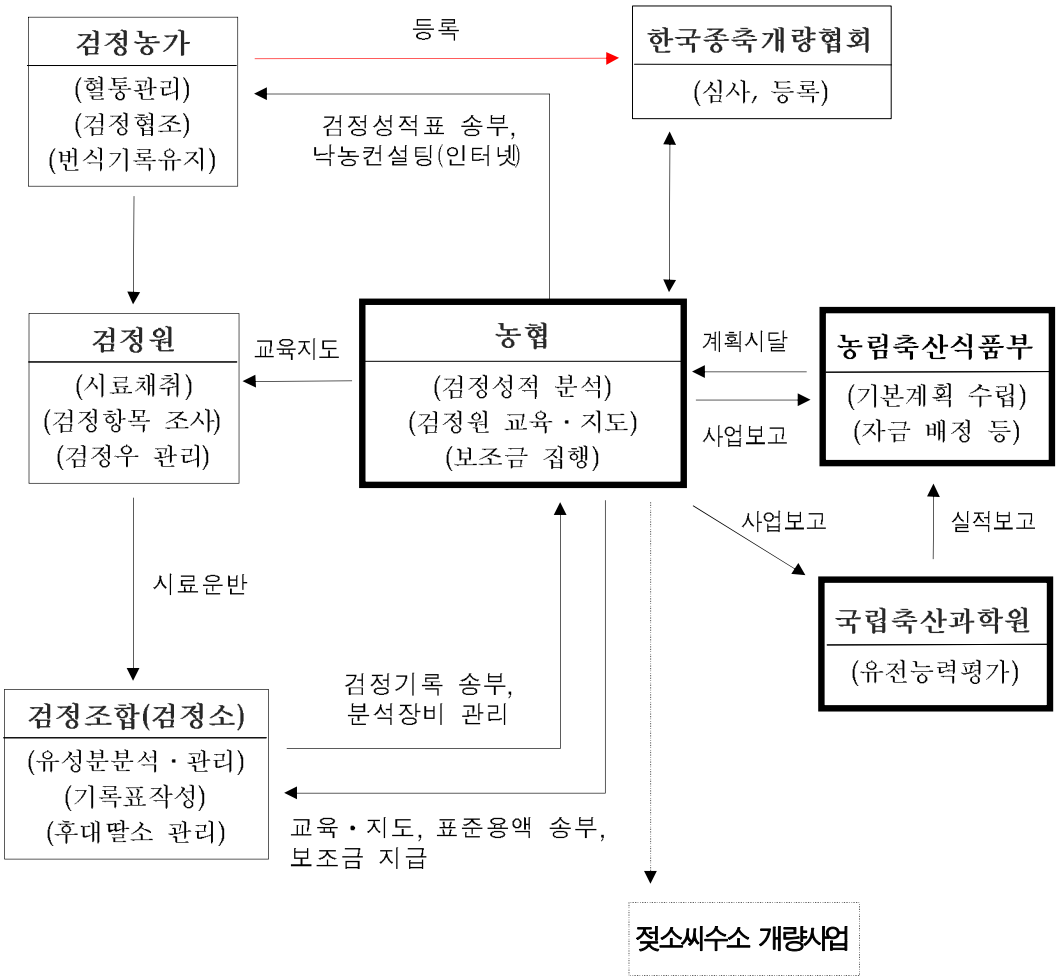

2. 2015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가. 사업대상 및 지원요건

❑ 사업대상

○ 검정농가, 지역축협·품목축협 및 한국종축개량협회

❑ 지원요건

○ 검정소 : 농협 젖소개량사업소가 농가의 젖소 번식능력과 산유능력 검정에 필요한 일체의 행위를 실시할 수 있도록 승인한 조합 및 단체

○ 검정 참여농가

- 축산업허가제에 따라 허가받거나 또는 축산업등록제에 따라 등록된 농가
- 검정에 참여하는 젖소의 송아지생산, 혈통등록, 번식, 경영정보 수집 및 개체 유성분 분석을 실시하는 농가

나. 대상자 선정방법 및 절차

❑ 세부계획수립

○ 농협 젖소개량사업소는 '15년도 유우군능력검정사업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추진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립축산과학원에 보고

- '15년도 세부추진계획을 검정조합(검정원) 및 검정농가를 대상으로 안내(교육) 실시

❑ 사업신청단계

○ 농협 젖소개량사업소는 '15년도 세부추진계획에 대해 사업참여 희망 검정조합(검정소)에 안내('15.1월)

- 사업목적, 검정농가 신청자격, 신청기간, 관리조합 사업참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기한 등

○ 검정조합은 농가에 검정사업 참여안내 및 신청접수 실시('15.1월)

○ 검정조합은 농협에 사업참여 신청

- 유우군능력검정농가 지정 및 보조금 교부 신청서(서식 1) 작성

❑ **사업자 선정단계**

○ 사업신청 검정조합(검정소)는 유우군능력검정농가로 지정 및 보조금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사업신청을 받아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농협 젖소개량사업소에 제출

○ 농협 젖소개량사업소는 검정조합별 사업물량 및 사업비 확정 통보('15.2월)

- 검정조합의 사업참여 신청을 받아 연간 사업계획물량과 사업비 한도 내에서 검정조합별 사업물량 및 사업비 배정계획 확정

○ 검정조합은 배정된 사업물량 및 사업비 범위 내에서 동 사업 대상자를 확정하여 '15.2월말까지 농가에 개별통지하고 그 결과를 농협 젖소개량사업소에 제출

○ 농협은 검정조합별 농가 교부결정 결과 보고('15.3월)

- '15년 조합별 사업물량 및 사업비 확정내역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고, 각 시·도에 통보

다. 지원자금의 용도

○ 참여농가 젖소의 생산, 혈통관리, 번식, 경영정보 수집 및 개체 우유성분 분석자료 등 한국형보증씨수소 선발자료로 활용되는 검정비 및 재료비

라. 지원형태 및 사업내용

❑ **지급기준** : 검정결과 전산입력 후 검정자료로 처리된 두수기준으로 연간 두당 19,440원을 월별(월 1,620원 균등분할)로 지급

○ 검정에 참여한 등록우에 지원하되 검정원은 반드시 유우군 검정우의 개체식별번호(바코드 귀표)를 조사하고 전산시스템에 입력

- 혈통등록비율 70% 이상인 농가 중 '14년도 후대검정사업에 참여한 농가에 한하여 지급
- 단, 신규참여 농가의 혈통등록비율은 아래와 같이 적용

구 분	보조금 지급 기준
신규 가입 1년이상 ~2년미만	혈통등록비율 20%이상
신규 가입 2년이상 ~4년미만	혈통등록비율 50%이상
신규 가입 4년이상 ~5년미만	혈통등록비율 70%이상
신규 가입 5년이상 ~	혈통등록비율 70% 이상, 후대검정사업 참여

* 후대검정사업 참여여부는 연도별 후대검정정액 사용기간 내 사용한 내역을 유우군검정기록시스템에 등재한 실적을 기준으로 하며, 2014년 사용실적의 전산 확인이 완료되는 '15년 7월부터 12개월을 지급대상 농가로 지정

- 보조금 지급제외 농가가 검정사업 참여를 원하는 경우 자부담으로 검정사업 참여 가능

* 미등록우가 검정원의 입회하에 첫 검정이 실시된 후 90일 이내에 등록된 경우 미지급된 보조금의 지급허용

- 검정우에서 생산된 암송아지의 개체정보(개체명호, 생년월일, 개체 이력제바코드번호, 부모등록번호 등)를 출생 후 2개월 이내에 입력하고 그 개체의 초종부 수정기록 입력 시 두당 1회에 한하여 1,620원 지급

○ 검정원 입회하에 검정하되 30±5일 간격으로 검정이 실시될 경우 지원

○ 비유기 중 2회 이상 검정이 일시 중지된 개체는 해당 비유기 동안 보조금 지원을 전면 중지 또는 지급된 보조금의 회수조치

- 다만, '15년도 유우군능력검정사업 세부추진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협 젖소개량사업소 또는 검정조합으로부터 검정우 사육자 또는 사업내역의 변경을 승인받았거나, 가축전염성 질병 또는 일정 회수 이상 산차 후 도태로 사업이 중단된 경우 제외

○ 질병치료, 방역, 품평회 등 공식행사 참여 또는 검정입회 간격이 31~35일이 되어 특정 월에 검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일시검정 중지 젖소에 대하여는 해당 비유기 중 1회에 한하여 보조금 지급을 허용

❑ 사업량 : 검정두수 108천두

○ 검정조합 사업의무

- 검정조합은 매월 검정기록표를 취합·정리하여 조사된 각종 자료를 농협 젖소개량사업소에서 운영하는 유우군기록관리 시스템에 입력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 검정용 우유시료는 유성분 분석장비를 활용하여 즉시 분석하고, 그 분석결과를 유우군기록관리시스템에 입력
- 검정조합은 농협 젖소개량사업소가 지정한 원유분석장비 관리 지침에 따라 분석장비를 관리하고, 농협 젖소개량사업소는 분석장비 표준화실태를 연 2회 점검

* 검정유성분분석장비 표준화를 위한 표준용액은 농림축산검역본부 또는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제조, 공급

* 표준화실태 점검결과 유성분 분석항목(유지방, 유단백, 유당, 체세포)과 유성분 각각의 기준값(slope, bias 등) 중 2개 이상에서 연2회 부적합 판정이 나온 검정조합은 인근 원유분석조합(기관)에 검정샘플 분석을 의뢰해야 하며, 불이행시 보조금 및 표준용액 공급 중단

- 다만, 분석항목(유지방, 유단백, 유당, 체세포) 모두 부적합판정이 나온 검정조합은 즉시 검정샘플 분석을 중단하고, 인근 검정조합에 분석을 의뢰해야 하며 불이행시 보조금 및 표준용액 공급 중단

* 분석중단 조합은 익년도 검정사업 신청전 농협 젖소개량사업소에 표준화 실태조사를 신청하여 전항목 적합 판정이 나온 경우 분석장비 재이용 가능

- 검정조합은 검정우가 암송아지를 생산할 경우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이력시스템 귀표부착번호를 조사하여 유우군검정기록관리시스템에 전산 입력
- 검정조합은 검정원의 처우개선에 적극 노력해야 함

○ 검정농가 사업의무

- 검정원이 정당한 검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 정당한 사유가 없이 검정일에 검정을 기피 또는 연기할 수 없음
- 검정 당일에는 일상적인 착유시간, 착유과정을 진행하여야 하며, 유량 및 기타 검정기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리적·생리적 영향을 주는 약품 등을 사용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 검정농가는 검정우를 사업기간 동안(보조금교부결정 통지일로부터 1년간) 사육 관리해야 함
  * 다만, 젖소의 폐사, 기타 사육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하여 농협 젖소개량사업소가 인정하고, 검정조합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제외
- 검정에 참여하는 농가는 젖소 후대검정사업에 참여해야 함
  * 검정두수의 10% 이상(최소 10str 이상)을 후보씨수소 정액으로 교배시키고, 태어난 암송아지는 직접 사육하면서 반드시 유우군능력검정 사업에 참여
  * 농협 젖소개량사업소는 후보씨수소 딸소들에 대한 친자감정 표본조사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 시행
- 인공수정 내역(수정증명서 보관)을 정확하게 기록하여 검정원에게 제시

마.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액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 물량 및 내역	금 액
○ 유우군능력검정		1,939
- 검정비	· 108천두×두당검정비용64,800 원×보조율30% ×집행율 90%	1,890
- 재료비(시약)	· 검정소25개×162천원×12회	49

바. 자금배정 및 집행

❑ 근거 규정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을 따름

❑ 자금집행

'15년 보조금 교부요청	▶	보조금 교부 결정 통보	▶	월별 지출 한도배분 요청	▶	월별 지출 한도 배정	▶	자금 수령 및 검정조합 지급
농협		농림축산 식품부		농협		농림축산 식품부		농협

○ 농협 젖소개량사업소는 매월 검정조합을 통하여 검정농가 보조금 소요금액을 조사하여 사업비를 산출하고 소요예산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 젖소개량사업소의 유우군능력검정 사업 자금배정 신청을 근거로 농협 축발기금사무국에 자금 배정

○ 농협 젖소개량사업소는 매월 농림축산식품부의 한도배정 승인을 받은 후 농협 축발기금사무국에서 자금을 수령하고, 검정사업 보조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보조금의 지출한도액을 검정조합별로 배분하여 통지

○ 검정조합은 매월 농협 젖소개량사업소에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보조금을 수령(지도사업 수익으로 기표)하고, 지급대상 검정농가별로 산정한 금액의 보조금을 정산(지급)

* 보조금 지급과 검정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검정조합과 검정농가 간의 별도 약정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음

사.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 이행점검

○ 유우군능력검정사업 참여조합의 계획대비 추진실적 및 보조금 집행상황 점검을 농가 현지지도와 병행하여 실시

- 점검대상 : 유우군능력검정사업 참여조합(2년 1회 점검)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4월, 10월)
- 점검반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축산과학원, 농협
- 점검항목 : 사업실적 및 사업비 운영현황(보조금 수령내역 및 집행현황) 등

❑ 사후관리

○ 농협 젖소개량사업소는 유우군능력검정 참여조합 중 다음과 같은 경우 검정조합 지정 취소 등 사업참여를 제한

- 검정사업 수행능력 부진시(검정입회 및 자료처리 부진, 검정자료 정확도 저하 등)
- 검정사업 목적 및 검정요령 위배 등
- 검정사업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검정사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 검정조합은 가급적 매년 1회 이상 유량계 점검을 자체적으로 실시하여 검정성적 신뢰도 향상

❑ 결과 보고 및 정산

보 고 사 항	보고기관	보고기한	서 식
○ '15 유우군 능력검정사업 추진실적 보고	검정조합→농협	분기말 익월 15일까지	서식4
	농협→국립축산과학원→농식품부	분기말 익월 20일까지	서식3
○ '15 유우군 능력검정사업 정산 보고	검정조합→농협	'15.1.20	서식4
	농협→농식품부	'15.2월말	서식3

3. 기타사항

가.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 종합평가 실시

○ 매년 종합평가를 통해 우수검정농가, 검정원, 검정조합을 시상함으로써 젖소개량의욕 고취

○ 종합평가 방법

- 주관기관 : 농협 젖소개량사업소
- 평가기간 :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원칙으로 함
- 평가대상 : 당해 연도 유우군능력검정사업 참여조합 및 농가
- 평가항목 : 검정조합 참여실적, 젖소개량성과, 검정농가 관리성과, 유성분 분석자료, 검정자료, 검정입회 정확도

○ 환류 : 사업부진 조합의 사업 시정, 취소 등 사업 참여 제한

❑ 국립축산과학원은 유우군능력검정성적의 유전평가를 실시하여 농협 젖소개량사업소, 검정조합 및 관련 기관에 제공

○ 농협 젖소개량사업소는 연간 유우군능력검정 성적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각 검정조합, 관련 기관 등에 제공

❑ 만족도 조사

○ 유우군능력검정 참여농가의 사업만족도를 조사하여 정책수립 및 사업지침에 반영

- 조사시기 : 매년 4월, 10월중
- 조사대상 : 유우군능력검정 참여농가 40호 내외
- 조사방법 : 설문(지) 조사

*** 대상선정, 설문조사 항목 등 조사계획은 주관기관 자체 수립·추진**

나. 기타사항

❑ 2016년도 사업 수요조사

○ 2016년도 유우군능력검정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조직(농가)은 사업신청 수요를 조사하여 농협 젖소개량사업소에 제출

- 수요조사 : 관련 조직에 2016년도 사업신청 안내문 발송(2~3월경)
- 제출기한 및 연락처 : 2015.3.30일까지, 031-929-1064

❑ 2016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 2015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 유우군능력검정사업 지원예고

○ 기타 사항은 '15년도 유우군능력검정사업 세부추진계획 준용

<서식 1>

유우군 능력검정농가 지정 및 보조금 교부신청서

신청자	주 소				
	이 름	(날인 또는 서명)		전화	
	목장명			핸드폰	
젖소사육 현황(두)	미경산우		경산우	합계	
후대검정 참여대상 (두)		후대검정 참여시기	상반기/하반기	보조금교부 신청대상(두)	
조사료 재배면적 (평)	초지		사료포	기타	
축 사 면 적	(평)		축산업(허가) 등록번호		
농가혈통 비율(%)			유우군검정사업 참여개시년도		
비 고					

보조금 교부 신청 대상개체는 유우군검정기록 전산시스템의 자료로 갈음하며 위와 같이 유우군 능력검정농가 지정 및 보조금교부를 신청합니다.

2015년 월 일

귀하

<서식 2>

2015년 유우군 능력검정사업 계획

1. 2014년도 사업실적

가. 사업실적

1) 검정우 관리실적

구 분	농가수	참여두수		
		경산우	미경산우	계
계 획				
실 적				
달성율				

2) 보조금 지급두수 실적

구 분	농가수	지급두수		
		경산우	미경산우	계
계 획				
실 적				
달성율				

3) 유우군능력검정사업 참여농가 교육 실적

실시일	장소	참여농가수	주요 교육내용

나. 사업비 집행액 (단위 : 천원)

구 분	축발기금 보조금	농협무이자 자금	지방비	농가 자부담	조합부담	총소요액
금 액						
부담율(%)						

다. 추진상 문제점

□

□

2. 2015년도 사업계획

가. 사업계획

1) 검정우 관리계획

구 분	농가수	참여두수		
		경산우	미경산우	계
계 획				

2) 후대검정사업 참여 계획

구 분	농가수	참여두수		
		경산우	미경산우	계
계 획				

3) 기금 보조금 지급 두수

구 분	농가수	지급두수		
		경산우	미경산우	계
계 획				

4) 유우군능력검정사업 참여농가 교육 계획

실시일	장소	참여농가수	주요 교육내용

나. 사업비 집행계획

○ 사업소요경비 확보방안 (단위 : 천원)

구 분	축발기금 보조금	농협 무이자자금	지방비	농가자부담	조합부담	총소요액
금 액						
부담율(%)						

○ 사업관리비 집행계획 (단위 : 원)

구 분		예산 금액	비 고
사업관리비	인 건 비		
	여 비		
	수 용 비		
	차 량 비		
	제세공과금		
	수선유지비		
	계		

다. 검정원 현황

이 름	검정지역	검정농가수	검정두수	기타
명			두( )*	

주. * ( )내는 1인당 평균관리두수임

라. 사업추진상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

□

<서식 3>

유우군능력검정사업 추진실적(중앙회용) 보고(/4분기까지)

1. 사업 추진실적

세 부 사 업 명	단위	연간계획 (A)	(/4분기)까지		진 도(%)	
			계획(B)	실적(C)	C/B	C/A
○ 검정소 운영 ○ 검정원 ○ 검정농가 ○ 검정두수	개소 명 호 두					

2. 사업비 집행실적

(단위 : 천원)

세 부 사 업 명	사업대상 (호, 개소)	사업량			사 업 비(/4분기)까지								
		계획	실적	%	축발기금			자부담			계		
					계획	실적	%	계획	실적	%	계획	실적	%
○ 유우군능력검정 - 검정비 - 재료비													

<서식 4>

유우군능력검정사업 추진실적(조합용) 보고(/4분기까지)

1. 사업 추진실적

구 분	단위	연간계획	(/4분기까지) 실적
○ 검정원	명		
- 전담검정원			
- 촉탁검정원			
- 전산입력원			
○ 검정농가	호		
○ 검정두수	두		

2. 사업비 집행실적

(단위 : 원)

구 분	재원 조달 내역(/4분기까지)					
	보조	자담				계
	축발기금	지방비	농협	농가부담	조합부담	
○ 유우군능력검정 사업비						

7 젖소육종농가사업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 한국형 보증씨수소 생산기반 마련을 위해 유전적 능력이 우수하고 질병으로부터 청정한 암소집단을 확대

- 고능력 수정란을 청정우군에 이식하여 후보 씨수송아지를 생산하고 생산된 암송아지는 유전평가 후 씨수송아지 생산용 씨암소로 활용

○ 낙농가의 개량요구에 부응하는 우수 능력의 보증씨수소 생산으로 국산정액 판매 활성화 및 수출기반 조성

나.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제5조(개량목표의 설정), 제7조(가축의 검정) 및 제47조(기금의 용도) 등

다.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년까지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이후
합 계	3,862	876	870	1,770	
- 보 조	3,862	876	870	1,770	
- 융 자	-	-	-	-	
- 지방비	-	-	-	-	
- 자부담	-	-	-	-	

라. 사업주관기관 : 농협 젖소개량사업소

마. 사업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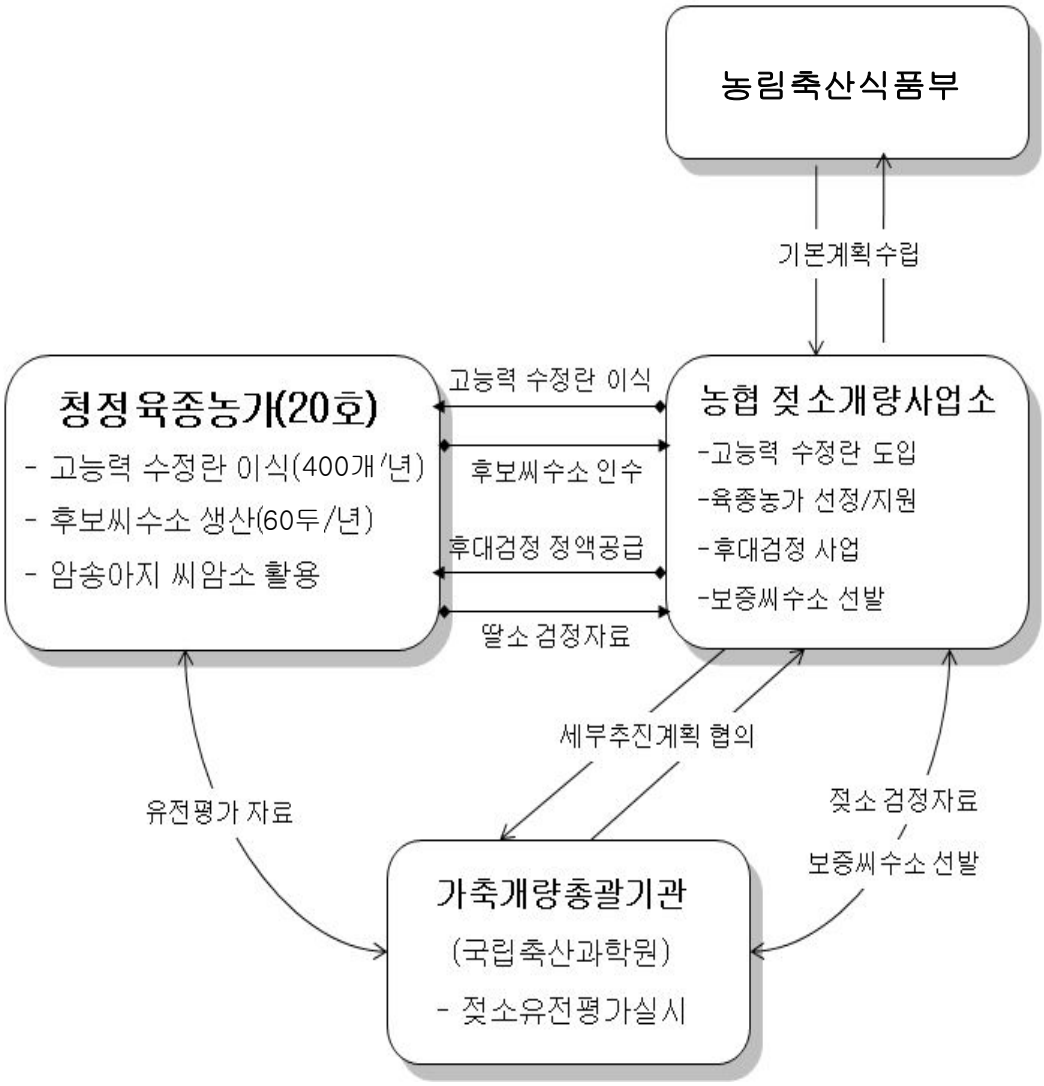

2. 2015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가. 사업대상 및 지원요건

❑ **사업대상 :** 젖소육종농가(지역축협 생축장 포함)로 농협 젖소개량 사업소로부터 지정받은 농가

❑ 지원요건

○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축산업허가 또는 축산업등록을 한 농가

○ 경산우 40두 이상(건유우 포함)을 사육하고 미경산우를 포함한 전체 암소 중 부·모를 아는 개체의 비율이 75% 이상인 농가

○ 보유한 모든 소(생후 8개월령 이상)에 대하여 젖소개량사업소가 정한 질병검진을 완료한 농가

*** 검진대상 질병 : 구제역, 우결핵, 부르셀라, 소 요네병, 소 류코시스**

- 검진대상 질병의 검진결과, 전두수가 음성 판정을 받은 농가. 단, 청정우군 조성을 목표로 아래의 조건을 갖춘 농가 또는 조합의 경우 심사위원회의 만장일치를 조건으로 사업참여를 허용
  - · 질병이 없는 수정란 이식 대상우(수정단계 미경산우) 20두 이상 확보
  - · 경산우 40두 이상 규모의 우사와 부지를 확보하고 동 규모의 착유시설 신축에 대한 타당성 있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농가
- 정기적인 질병검사로 지속적인 청정우군 유지가 가능한 농가
- 청정우군 유지를 위한 방역시설을 보유한 농가
- 장기적인 사업참여 가능 농가(축주연령, 후계자 여부 등)

나. 대상자 선정방법 및 절차

❑ 대상자 선정방법 및 절차

○ 청정육종농가 선정방법

- 농협 젖소개량사업소는 관련 대학 및 기관의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류심사 및 현지심사를 거쳐 참여농가를 선정(연중)
- 젖소 청정육종농가의 사업 신청자격에 해당하고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서식 1)에 따른 구비서류를 갖추어 농협 젖소개량사업소에 사업참여 신청
- 신규 참여 청정육종농가 : 참여 희망농가 신청서 접수(연중)

○ 청정육종농가 선정절차

- 사업설명회 개최 ⇒ 사업참여 수요조사 ⇒ 농가 질병검진 ⇒ 사업참여 신청서 접수 ⇒ 심사위원회 구성 및 현장심사 ⇒ 사업계약추진

다.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고능력 수정란 도입비용

○ 육종농가 지도·운영을 위한 제반비용

- 질병검진, 수정란 이식, 연구용역, 농가 관리 프로그램개발 등

* **농협 젖소개량사업소는 청정육종농가 사업참여 확대를 위해 질병검진 완료농가 중, 부득이한 사정(도태대상우 다수발생 등)으로 청정화 완료시기가 지연되어 질병검진비용이 과다 발생한 경우 청정육종농가 선정완료 후 육종농가가 기지급한 검진비용의 일부 및 우군 청정화에 따른 도태장려금 지원 가능**

○ 젖소 씨수소선발 개량장려금

- 젖소 청정육종농가가 생산한 수송아지가 보증씨수소로 선발될 경우 해당 농가에 개량장려금 지급

라. 지원형태 및 사업량

❑ 지원형태 : 고능력 수정란 도입, 육종농가 선정 및 운영을 위하여 농협 젖소개량사업소 사업비 보조

❑ 농협 젖소개량사업소 역할

○ 우수 젖소 고능력 수정란 도입

○ 젖소 청정육종농가 모집·선정 및 지도·운영

○ 우수 젖소 암소를 보유한 검정농가에서 생산된 수정란을 젖소 청정육종농가 사업에 활용

❑ 젖소 청정육종농가 사업량 : '20년까지 20호 선정 계획

(단위 : 호)

구 분	'14년이전	'15	'16	'17	'18	'19	'20	누 계
청정육종농가	14	1	1	1	1	1	1	20

마.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물량	사업비	비 고
고능력 수정란도입	400개	1,124	고능력 수정란 도입비용 (400개×$2,500×1,124원)
육종농가 운영	15호	646	육종농가 선정 및 운영 관련; 교육, 개량 장려금, 질병검진, 수송아지 사양비 ,청정우군 조성 및 유지; 관련 용역 등
합 계		1,770	

* 젖소 청정육종농가 사업비는 젖소능력검정(정액생산·공급) 사업에 포함

바. 자금배정 및 집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과「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등을 따름

사.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 젖소육종농가사업 추진실적을 아래와 같이 점검 실시

- 점검대상 : 젖소 청정육종농가
- 점검일정 : 연 1회 이상
- 점검반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축산과학원, 농협 젖소개량사업소
- 점검항목 : 관리우 질병관리 현황, 송아지 생산두수, 후대검정 딸소 생산실적 및 검정자료 관리 현황

○ 농협 젖소개량사업소는 청정육종농가 성적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농가에 제공

○ 농협 젖소개량사업소는 청정육종농가 중 다음 사항에 해당되 경우 청정육종농가 지정을 취소하고 사업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 농협 젖소개량사업소의 젖소육종농가사업 목적에 부합되지 않거나, 사업실적이 부진하여 젖소육종농가사업을 수행할 수 없거나, 지침 및 계약을 위반했거나,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젖소 후대검정사업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

❑ 결과보고

○ 농협 젖소개량사업소는 젖소육종농가사업 분기별 사업실적을 (서식2)에 따라 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국립축산과학원에 보고

3. 기타사항

가.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평가

○ 농협 젖소개량사업소는 젖소육종농가에 대해 매년 사업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이 부진한 농가는 사업에서 제외함으로써 젖소육종농가의 사업부실 방지와 사업성과 극대화를 도모

○ 평가방법

- 평가주관기관 : 농협 젖소개량사업소
- 평가기간 :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원칙으로 함
- 평가대상 : 해당 연도 젖소육종농가(신규 참여농가는 제외)
- 평가항목 : 검정사업 참여현황, 수란우 관리현황, 정기 질병검진결과, 송아지 관리현황(분만율, 육성율, 인수율, 혈통등록등), 사업 협조여부 등

❑ 사업환류

○ 사업부진 젖소육종농가 사업 시정 또는 지정 취소

<서식1>

젖소육종농가사업 신청서

1. 사업신청자

이 름		축산업(허가) 등록번호	
목장명		주민등록번호	
목장소재지		전화번호	
자택소재지		휴대전화번호	

2. 사업신청내용

젖소 암소 사육두수			혈통·고등등록우	
총사육두수	미경산우	경산우	경산우 ( )	미경산우 ( )
두	두	두	두(%)	

※ 총사육두수 : 암소사육 전두수

3. 일반현황

축사 기타	축사 면적		방역시설
	동 평	동 평	차량( ), 대인( )
검정 현황	검정소	검정두수	검정시작년도
			년

4. 첨부서류

① 서식 제 호 서식 젖소 암소 보유내역서

※ 신청대상우 및 자료조사내역이 많은 경우 첨부하여 제출(전산자료 출력가능)

② 축산업 (허가)등록증(서) 사본

③ 방역시설 사진(보유시)

④ 질병검진항목에 대한 검진결과통보서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5년 월 일

신청인 (인)

농협 젖소개량사업소 귀하

<서식2>

젖소육종농가사업 추진실적 보고(/4분기)

1. 사업 추진실적

세 부 사 업 명	단위	연간계획 (A)	(/4분기)까지		진 도(%)	
			계획(B)	실적(C)	C/B	C/A
젖소육종농가육성사업						
○ 고능력수정란 도입	개					
○ 고능력수정란 이식	개					
○ 청정육종농가 선정	호					

2. 사업비 집행실적

(단위 : 천원)

세 부 사 업 명	축발기금			농협			계		
	연간 계획	실적	%	연간 계획	실적	%	연간 계획	실적	%
젖소육종농가육성									
○ 고능력 수정란 도입									
○ 육종농가 운영									

<서식3>

젖소육종농가를 활용한 보증씨수소 선발 체계도

구 분	소요기간 (개월)	세 부 내 역
수정란이식 (4개월) 임신기간 (10개월)	0 ~ 14	육종농가 20호 (400두) × 고능력 수정란 (400개) →
질병검사& 씨수송아지 매입 (4개월)	15 ~ 18	※ 400두 이식 ×수태·생존율(30%) = 120두(♂60두, ♀60두) 예비 후보 (♂60두) ↔ 고능력 씨암소 재활용 (♀60두) ※ 유전평가후 씨암소로 선발
당대검정& 정액생산 (12개월) 암소선정& 교배 (6개월)	19 ~ 36	후보 씨수소 (♂35두) × 교배암소(육종농가) (♀14,000두 (♂35두×♀400두))
암소 임신기간 (10개월)	37 ~ 46	후대검정 딸소 생산 (♀3,325두) ※ 14,000두×45%(분만율)×50%(성비)
암소육성 & 임신분만 (27개월)	47 ~ 73	후대검정 딸소 육성 (♀3,000두) ※ 3,325두×65%(육성율)
암소검정 &유전평가 (10개월)	74 ~ 83	후보 씨수소 유전평가 (♂35두) ← 후대검정 딸소 검정착수, 선형심사 (♀2,100두) ※ 후보씨수소 1두당 딸소 60두
보증종모우 선발 & 활용	83 (6.9년)	보증씨수소 선발 (♂5두) → 정액공급 낙농가

MEMO

MEMO

MEMO

MEMO

종 돈 개 량

8 종돈농장검정사업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 돼지의 경제능력 검정을 통해 선택지표를 제공하고, 국내산 우수 종돈의 선발·보급

나.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제5조(개량목표의 설정), 제6조(가축의 등록), 제7조(가축의 검정) 및 제47조(기금의 용도) 등

다.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년까지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이후
합 계	3,215	310	274	**272**	
- 보 조	1,902	190	172	**172**	
- 융 자	-	-	-	**-**	
- 지방비	-	-	-	**-**	
- 자부담	1,413	120	102	**100**	

라. 사업주관기관 : 한국종축개량협회

마. 사업추진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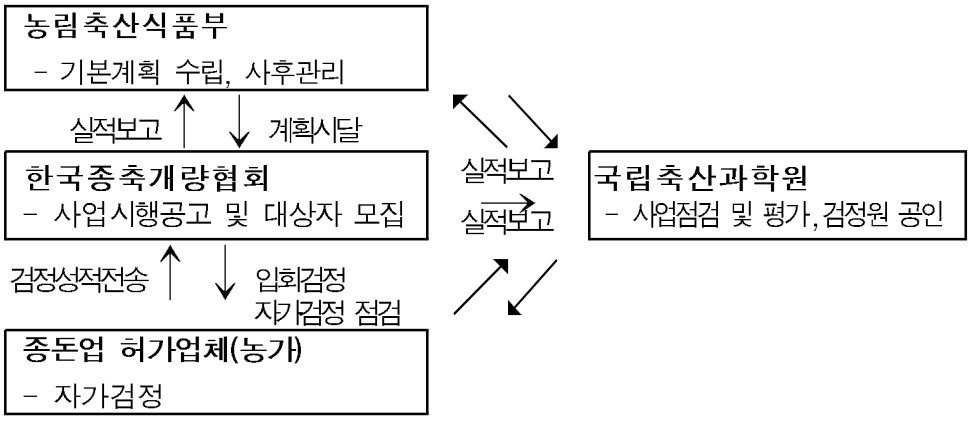

2. 2015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가. 사업대상 및 지원요건

❑ 농장검정 지원요건

○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시·군에서 종돈업 허가를 받은 농장으로 품종과 계통 고유의 형질을 가진 종돈을 보유한 농가

- 종돈업 허가 농장이 능력검정원 확보시 자가검정 가능

* 다만, 자가검정의 경우 한국종축개량협회로부터 연간 1회 이상 점검을 받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농장검정 종류 : 입회검정, 자가검정

○ 입회검정 : 한국종축개량협회 소속직원이 농장입회하여 검정

○ 자가검정 : 공인된 능력검정원을 확보한 종돈업 허가업체가 자체적으로 검정

❑ 검정비 지원 제외 대상

○ 자가검정 성적을 검정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못했을 경우

* '15년부터 적용하기로 한 검정참여율 기준(입회검정 모돈 4배수 이상, 자가검정 모돈 5배수 이상 농가에 한하여 보조금 지급)은 '16년으로 연기

나. 대상자 선정방법 및 절차

❑ 사업추진 체계

○ 농림축산식품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한국종축개량협회에 통보

○ 한국종축개량협회는 기본계획에 따라 국립축산과학원과 협의하여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추진

-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검정유형, 검정방법 및 주기 등

○ 한국종축개량협회는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공고 및 대상자 모집

- 한국종축개량협회 홈페이지(http://www.aiak.or.kr) 공고 및 홍보
- 농장검정을 신청하는 종돈장(검정기관)은 농장검정사업 계획서(서식1)를 작성하여 한국종축개량협회에 제출
- 한국종축개량협회는 농장검정신청서를 접수하여 연간계획 수립

❑ 선정방법

○ 한국종축개량협회는 기본계획 및 자체 세부추진계획에 따라 농장검정 신청을 받아 물량 배정

❑ 추진절차

○ 한국종축개량협회는 연간 검정계획 등 세부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립축산과학원에 보고('15.1월)

○ 한국종축개량협회의 소속검정원은 계획(연간, 월간, 주간)에 따라 입회검정을 실시하고, 능력검정원을 확보한 농가에서는 자가검정을 실시한 후 검정성적을 한국종축개량협회에 전송

○ 한국종축개량협회는 입회검정 성적 및 전송받은 자가검정 성적을 이용하여 D/B를 구축하고 적정 여부에 따라 월별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한다.

- 매주 유전능력을 평가하고, 검정성적서를 해당 농가에 발송하여 선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다. 지원자금의 용도 : 농장검정비 일부 보조

라. 지원형태 및 사업내용

❑ 농장검정비 일부 보조

○ 사업량 : 48,800두(입회검정 12,800두, 자가 36,000두)

○ 검정대상돈은 자돈등기된 순종 및 번식용 씨돼지

❑ **사업내용**

○ 농장검정 대상돈은 버크셔, 랜드레이스, 요크셔, 듀록, 햄프셔, 재래돼지, 합성돈(국립축산과학원이 인정한 것)과 기타 검정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종의 암·수를 대상으로 실시

○ 검정돈 조건에 부합되는 개체를 대상으로 체중이 90㎏ 전후에 도달 하였을 때 1일평균 증체량, 등지방두께, 등심단면적(등심깊이), 종돈의 적격성 조사

- 1일 평균증체량은 (종료시체중-1.0㎏)/(종료일령)으로, 등지방두께 및 등심단면적은 초음파측정기를 사용하여 조사

○ 한국종축개량협회는 주간단위로 검정자료를 수집한 후 검정성적 및 유전능력 평가결과 자료를 공표

- 농가발송, 홈페이지 및 종돈개량지에 게재하여 홍보

마.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농장검정비 172백만원

- 입회검정 : 10,000원/두(보조 : 5,000원, 자담 : 5,000원)
- 자가검정 : 4,000원/두(보조 : 3,000원, 자담 : 1,000원)

바. 자금배정 및 집행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에 따라 자금배정 및 집행

사.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 사업점검 실시(1회/년 이상)

○ 점검대상 : 농장검정 실시농가

○ 점검반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축산과학원, 한국종축개량협회

- 농가들의 부당행위 사전방지, 사업만족도, 건의사항 등 수렴

○ 점검항목 : 농장검정 실시현황(규정에 의한 검정실시)

❑ 자가검정농가 점검(1회/년 이상)

○ 한국종축개량협회는 자가검정 농가가 검정기준에 따라 적정한 검정을 실시하는지 여부를 점검

- 자가검정 농가 입회 점검표(서식2)에 의거 점검

○ 점검시 부당 행위가 확인되면 해당 농가에 대한 보조금 회수조치

❑ 결과 보고 및 정산

○ 한국종축개량협회는 분기별 사업추진 실적을 매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국립축산과학원 및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국립축산과학원에 분기별 돼지능력검정사업 추진실적을 보고(서식 3, 4)하고, 농장검정보고회, 교육, 홍보, 지도 및 점검 실시

○ 한국종축개량협회는 사업완료 후 농림축산식품부에 정산보고

3. 기타사항

가.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농장검정사업 평가

○ 평가절차 : 농장검정사업 실적 및 개량추이를 분석

○ 평가대상 : 농장검정 실시 농가

○ 평가기관 : 국립축산과학원, 한국종축개량협회

* 추진계획은 주관기관 자체 수립·추진

❑ **농장검정사업 보고회**

○ 목적 : 농장검정결과 보고를 통한 개량성과 도출

○ 개최시기 및 횟수 : 4~5월, 1회/년

○ 참석대상 : 종돈업체 및 관련업계 등 100명

○ 홍보 : 신문, 월간지 등 종돈개량성과 홍보

❑ **종돈개량방향 설정, 농장검정 활성화 등에 대한 제도개선 추진**

나. 2016년 사업예고

❑ **검정 참여비율 등에 따른 검정비 지원 제외**

○ 모돈규모 50두 이하인 경우

○ 검정 참여비율이 입회검정은 모돈의 4배수, 자가검정은 5배수 이하인 경우

- 검정참여비율은 2015년 실적에 따라 대상자 선정

<서식 1>

2015년도 종돈농장검정사업 계획서

1. 농장현황

<table>
<tr><td>농장명</td><td colspan="3"></td><td>전화번호</td><td colspan="3"></td></tr>
<tr><td>이 름</td><td colspan="3"></td><td>FAX번호</td><td colspan="3"></td></tr>
<tr><td>주 소</td><td colspan="7"></td></tr>
<tr><td rowspan="2">사육
두수
(모돈수)</td><td colspan="3">1)순종생산용</td><td colspan="3">F1생산용</td><td>사업자등록번호</td></tr>
<tr><td>암</td><td>수</td><td>계</td><td>암</td><td>수</td><td>계</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rowspan="2">돈사
현황
(개동)</td><td>번식사</td><td>육성(비육)사</td><td colspan="2">검정사</td><td>총건물</td><td>비고</td></tr>
<tr><td>개동</td><td>개동</td><td colspan="2">개동</td><td>개동</td><td></td></tr>
<tr><td rowspan="2">노동력</td><td>자가</td><td>고용</td><td colspan="2">합계</td><td>작성일</td><td></td></tr>
<tr><td>명</td><td>명</td><td colspan="2">명</td><td>작성자</td><td></td></tr>
</table>

1) **순종생산용 모돈두수**는 '16년도 검정 참여비율 등에 따른 검정보조금 지원의 기준이 됨
'16년 검정보조금 기준('15년도 입회검정 : 모돈의 4배 이상, 자가검정 : 모돈의 5배 이상)

2. 농장특이사항(검정두수 증감요인 기술- 가능한 상세히)

3. 검정형태(해당란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입회검정: 검정기관직원 출장검정 ( )

자가검정: 농장내 공인능력검정원 검정 ( )

4. 검정용 초음파기계 방식(해당란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A-모드 : 디지털방식( ) B-모드 : 화상방식( )

5. 2015년도 월별 농장검정 계획두수

월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두수													

<서식 2>

자가검정 농가 입회 점검표

점검농가		점검일		점검자	

□ 검정기계 및 돈형기
① 검정기계 및 돈형기의 종류
② 검정기계 및 돈형기의 상태 상) 중) 하)
③ 돈형기의 주기적 점검 실시여부 예) 점검주기: 아니오)

□ 검정원
① 공인된 능력검정원의 자격을 취득 여부 예) 아니오)
② 검정원의 이름과 자격기관 이름: 기간:
③ 검정원의 각형질 측청부위와 초음파기기의 숙달 정도 상) 중) 하)
④ 검정요령에 따른 적정한 검정실시 여부 예) 아니오)
⑤ 검정시 검정인원(보조인원 포함) 명

□ 농가의 검정흐름(절차)도

□ 농가현황
① 모돈규모(품종별)
- 순종생산용모돈(L: Y: D: 기타: 계:)
- F1생산용모돈 (L: Y: D: 기타: 계:)
② 검정 후 자료정리 상태 양호) 불량)
③ 월 검정횟수 : 회

□ 점검농가의 문제점 및 개선점

□ 종합평가

<서식 3>

능력검정사업 추진실적 보고(/4분기)

(단위 : 천원)

세 부 사 업 명	단위	사업량			사 업 비											
					축발기금			지방비			자담 등			계		
		계획	실적	%	계획	실적	%	계획	실적	%	계획	실적	%	계획	실적	%
○농장 검정 -입회 ·한국종축개량협회 ·대한한돈협회 - 자가(종돈업체)																
계																

<서식 4>

농장검정비 지원 대상돈 혈통 및 검정성적 내역서

검정 구분	품종	성별	검정기관 (농장)	검정원 이 름	초음파 모델명	개체 번호	생년 월일	부 혈 통 등록번호	모 혈 통 등록번호

모의 산자 성적			산육검정성적					
산차	총산자수 (두)	생 존 산자수 (두)	검정개시		검정종료		등지방 두 께 (mm)	90Kg 도달일령 (일)
			날짜	체중 (kg)	날짜	체중 (kg)		

※ 검정구분 : 입회, 자가

9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사업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 목 적

○ 국가단위 유전능력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우량종돈 선발, 교류, 평가를 통해 국내 여건에 맞는 종돈 개량

○ 돼지개량네트워크사업을 통해 선발된 우량 종돈을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개량 종돈의 활용성을 증대

나.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제5조(개량목표의 설정), 제6조(가축의 등록), 제7조(가축의 검정), 제47조(기금의 용도)

다.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년까지	2013년	2014년	2015년	2015년이후
합 계	2,429	861	688	**1,681**	
- 보 조	2,429	861	688	**1,431**	
- 융 자	-	-	-	-	
- 지방비	-	-	-	(250)	
- 자부담	-	-	-	-	

라. 사업주관기관

❑ 사업주관기관 : 국립축산과학원

❑ 사업시행기관 : 한국종축개량협회, 시·도

마. 사업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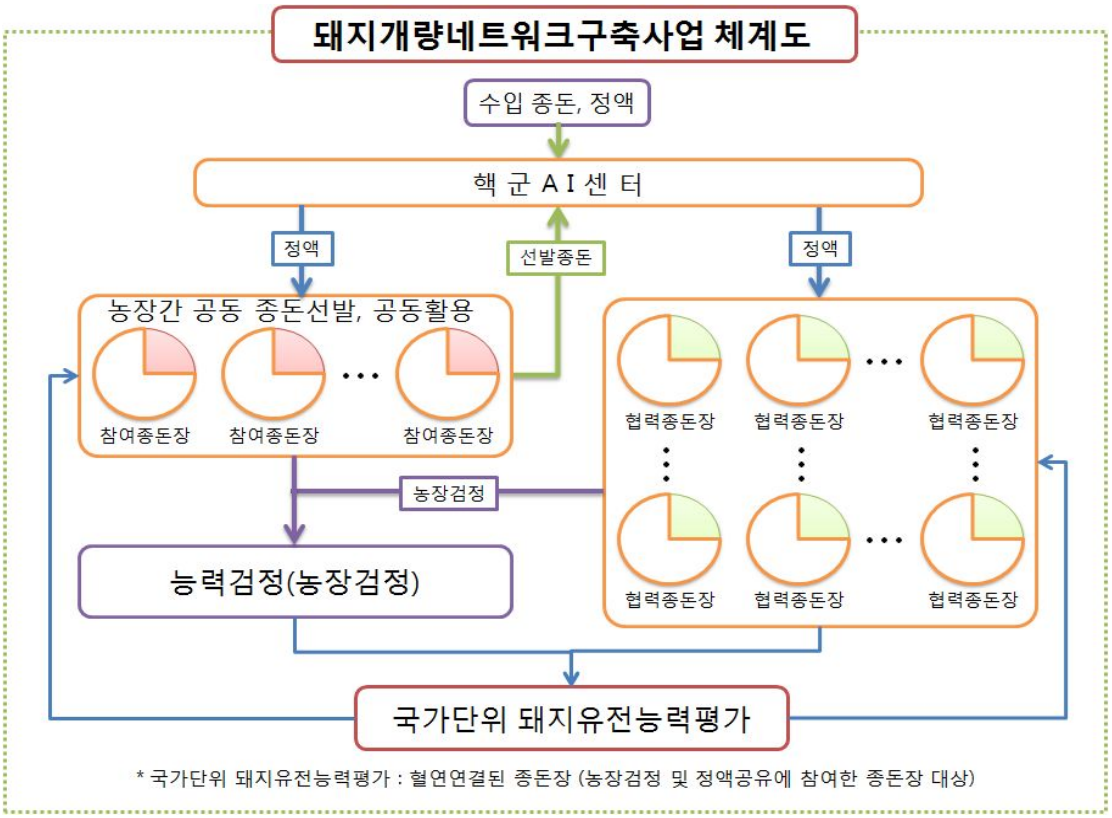

○ 종돈의 공동선발 및 활용으로 참여종돈장 및 협력 종돈장간 유전적 연결

- 필요할 경우 해외 유전자원(종돈 또는 동결정액)을 수입·공유

○ 유전자원 공유는 핵군AI센터를 지정하여 운영

* 모계와 부계를 분리하여 지정 가능

○ 한국종축개량협회는 국립축산과학원과 협의하여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사업의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국립축산과학원은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사업의 추진 및 의견수렴을 위하여 사업대상자, 산·학·연 등으로 구성한 돼지개량네트워크 추진위원회(이하 돼지개량위원회)를 운영

- 사업대상자의 선정, 수입종돈(동결정액) 선발 및 활용 등 주요 사항을 돼지개량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아 추진할 수 있음

○ 한국종축개량협회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립축산과학원, 참여종돈장, 협력종돈장, 핵군AI센터 등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음

2. 2015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①	돼지개량네트워크 구축

가. 사업대상 및 지원요건

❑ 사업대상

○ 참여종돈장, 협력종돈장, 핵군AI센터

❑ 지원요건

〈 참여종돈장 〉

○ 축산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른 우수종축업체 인증기준에 적합한 종돈업 허가업체(사육두수는 예외)

○ 참여대상 품종 규모

- 부계(두록) 또는 모계(랜드레이스, 요크셔) 계통 원종돈(GGP) 모돈 50두 이상 규모

○ 질병·방역 : HACCP 인증을 받고 사업주관기관이 정한 질병 항목에 대한 검사결과 문제가 없는 종돈장

〈 핵군AI센터 〉

○ 참여종돈장의 우수 종돈을 활용하여 계획적으로 정액을 공급할 수 있는 우수정액등처리인증업체

〈 협력종돈장 〉

○ 대상품종의 순종 모돈 두수가 50두 이상 규모인 종돈업허가업체

나. 대상자 선정방법 및 절차

❑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사업 세부추진계획 수립

○ 한국종축개량협회는 2015년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사업의 세부 추진계획을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15.2월)

❑ 사업대상자 선정 절차

○ 한국종축개량협회는 국립축산과학원과 협의하여 홈페이지(http://www.aiak.or.kr)에 사업대상자 선정에 대한 세부추진계획 안내 및 참여 대상자 모집 공고 실시

○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참여종돈장, 협력종돈장, 핵군AI센터는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사업 참여신청서(서식1)와 의무이행각서(서식4)를 함께 작성하여 한국종축개량협회에 신청

○ 한국종축개량협회는 참여희망업체의 신청서류 및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필요시 현장실사단을 구성하여 신청내용 등을 확인 후 돼지개량위원회에서 선정

- 선정결과를 해당 농가에 통보, 국립축산과학원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다. 지원자금의 용도

○ 돼지개량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사업비, 운영비, 사료효율 측정기, 우수종돈 구입비 보조

라. 사업내용 및 지원형태

❑ 사업내용

○ 참여·협력 종돈장은 핵군종모돈의 정액 공유를 통해 유전적으로 연결하여 국가단위 유전평가체계 확립 및 우수 종돈 선발·활용

- 국립축산과학원의 유전능력평가(선발지수) 결과 상위 5% 이내 종모돈 중 질병검사 결과 문제가 없는 개체를 선발하여 핵군 AI센터에 입식
- 핵군AI센터는 핵군종모돈 정액을 참여종돈장 및 협력 종돈장에 공급

○ 한국종축개량협회는 참여 및 협력종돈장의 의무사항 수행여부 확인

- 참여 및 협력종돈장은 계획교배(선발된 핵군종모돈 정액을 참여모돈 두수의 10% 이상의 씨암돼지에 교배)를 실시하고, 참여종돈장 및 협력종돈장의 모돈이 생산한 자돈을 검정
- 핵군AI센터의 정액제공 여부 및 현황
- 참여종돈장 및 협력종돈장, 핵군AI센터의 질병검사 여부 및 결과 확인

○ 국립축산과학원은 혈통기록, 농장검정성적 등을 이용하여 유전능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한국종축개량협회 및 사업대상자에 통보

❑ 지원형태

○ 핵군AI센터 우수종돈구입비 : 100% 보조(300만원이내/두)

○ 해외 우수 유전자원 구입비 : 70% 보조

○ 수퇘지 검정 지원비 : 검정완료 수퇘지 탈락돈에 대해 시세차액의 70% 보조(전년도 평균시세 기준)

○ 질병검사비 : 사업대상자 종돈의 질병검사비 100% 보조

○ 육질검사비 : 사업대상자 종돈의 육질검사비 100% 보조

○ DNA 분석비 : 100% 보조

○ 운영비 : 위원 수당 및 회의비 등

○ 사료효율 측정기 : 구입비 50% 보조(1,000만원이내/대)

❑ 지원방법

○ 핵군AI센터 우수종돈구입비

- 지원기준 : 참여종돈장에서 생산된 돼지 중 능력검정을 통해 선발된 핵군종모돈(상위 5% 이내)

- 지원방법

  · 핵군종모돈으로 선정된 돼지를 구입한 핵군AI센터는 한국종축개량협회에 우수종돈 구입비 지급신청서(서식2)를 제출

  · 한국종축개량협회는 종돈구입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대상돈의 질병검사 결과(4회 검사) 모두 정상임을 확인한 후 보조금 집행

○ 해외 우수 유전자원 구입비

- 지원기준 : 돼지개량위원회에서 결정된 계획에 따라 수입된 해외 우수 유전자원(정액 또는 종돈)

- 지원방법 : 한국종축개량협회는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구입비의 70% 지원

○ 수퇘지 검정 지원비

- 지원기준 : 참여종돈장 및 협력종돈장에서 검정하여 탈락된 수퇘지

- 지원방법

  · 참여종돈장 및 협력종돈장은 수퇘지 검정 지원비 지급신청서(서식3)를 작성하여 한국종축개량협회에 제출

  · 한국종축개량협회는 적정성이 확인된 신청 종돈장에 보조금 지급

○ 질병검사비

- 지원기준 : 참여 및 협력 종돈장에서 종돈장방역관리요령 및 우수정액등처리업체 인증요령에 의해 실시한 질병검사비 전액

- 지원방법

  · 참여 및 협력 종돈장은 시·도 가축위생시험소 등을 통해 실시한 질병검사비에 대해 지급신청서(서식5)를 작성하여 한국종축개량협회에 제출

  · 한국종축개량협회는 검사내역 및 적정성 확인 후 보조금 지급

  *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사업에 필요한 질병검사를 실시할 경우 질병검사에 필요한 재료는 시행기관이 구매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제공

○ 육질검사비

- 지원기준 : 참여종돈장 또는 협력 종돈장의 검정종료돈 중 선발에서 탈락된 종돈의 육질검사비(pH24, 이화학, 시료보상 등)

- 지원방법 : 한국종축개량협회는 육질검사결과를 확인한 후 참여종돈장 또는 협력 종돈장에 보조금 지급

  * 육질검사기관은 검정자료의 균일성을 고려하여 3년 단위로 선정하고, 매년 전년도의 사업수행결과 평가를 통하여 재계약

○ DNA 분석비(친자감정)

- 지원기준 : 사업대상자 종돈의 친자감정을 위한 DNA 분석비 (부돈, 모돈, 자돈)

- 지원방법 : 한국종축개량협회는 친자감정용 DNA분석을 위해 참여업체 종돈의 모근 또는 조직(냉동보관)을 취합하여 국립축산과학원이 지정한 분석기관에 의뢰하고 분석비용을 집행

○ 운영비

- 한국종축개량협회는 돼지개량네트워크사업 운영에 필요한 회의비, 인건비 등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보조금 집행

○ 사료효율측정기

- 지원대상 : 참여 및 협력 종돈장 중 희망업체(10대 이하/업체)

  * 구입을 희망하는 참여종돈장 및 협력 종돈장이 많을 경우 참여 모돈두수에 대비하여 구입비 지원

- 지원기준 : 구입비의 50% 보조(1,000만원이내/대)

- 지원방법 : 사료효율 측정기 구입을 희망하는 참여 및 협력 종돈장은 신청서(서식6)를 작성하여 한국종축개량협회에 제출

  * 종돈장은 기기를 설치하고 한국종축개량협회는 이를 확인하여 보조금을 지급

❑ 참여업체의 의무

〈 참여종돈장 및 협력종돈장 〉

○ 참여 및 협력종돈장은 교배모돈의 10%이상을 선발된 핵군종모돈(상위 5% 이내)의 정액 또는 해외 우수유전자원으로 계획교배를 실시하고, 생산된 자돈의 일정 두수 이상을 검정

* 참여종돈장 : 부계(♀ 2두, ♂ 2두/복당), 모계(♀ 3두, ♂ 0.5두/복당)

* 협력종돈장 : 부계(♀ 1두, ♂ 1두/복당), 모계(♀ 1.5두, ♂ 0.25두/복당)

○ 참여종돈장은 공유용으로 선발된 종돈을 핵군AI센터에 공급

〈 핵군AI센터 〉

○ 핵군AI센터는 핵군종모돈을 참여종돈장에서 구입하여 청정화를 유지하고 참여 및 협력종돈장 모돈두수의 15%이내로 정액 공급

○ 일반 종모돈 입식시 핵군종모돈 입식과 동일하게 질병검사를 실시하여 음성임을 확인 후 입식

* 위 의무사항 이외에 돼지개량위원회에서 추가로 협의한 중요 결정 의무사항 이행

마.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15년 사업비 : 1,681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비	비 고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사업비	822	
운영비	59	
사료효율 측정기 구입비	300	
우수정액등처리업체 우수종돈 구입비	500	지방비 250백만원 포함
합 계	1,681	

바. 자금배정 및 집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과「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등을 따름

사.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 한국종축개량협회는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사업대상자의 이행사항 점검

○ 사업대상자(참여종돈장, 협력종돈장, 핵군AI센터)의 질병검사(종돈장 방역관리요령, 우수 정액등처리업체인증요령에 준함) 결과 확인

- 참여종돈장 및 핵군AI센터에 질병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참여종돈장은 협력종돈장으로 지위 변경, 핵군AI센터는 선정 취소

* 협력종돈장이 참여종돈장으로 변경을 원할 경우, 참여종돈장 선정절차에 따라 대상농장을 선정

○ 참여 및 협력종돈장의 농장검정과 계획교배 등에 대하여 점검

○ 필요시 참여업체를 방문하여 이행내역을 점검

○ 분기별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사업 추진실적을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립축산과학원에 보고

❑ 사후관리

○ 국립축산과학원은 참여 및 협력 종돈장에 대해 매월 유전능력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자료를 공개하고, 그 결과를 이용하여 계획교배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

○ 한국종축개량협회는 보조금으로 구입한 장비에 대하여 장비보유 대장을 비치하여 관리하고, 사업대상자가 임의로 처분하거나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사후관리(파손 등으로 사용불가 시는 농가자담으로 수선 또는 구입토록 시정조치)

- 사후관리 기간 : 기계·장비의 경우 5년
- 사후관리 기간 내 타인에게 시설 등을 양도 시 자금회수를 원칙으로 함. 다만, 합병·통합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원 자금을 승계하고자 할 경우에 시행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연 1회 이상 참여종돈장, 협력종돈장 및 핵군AI센터의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 및 지도

- 점검반 : 국립축산과학원, 농림축산검역본부, 한국종축개량협회
- 점검대상 : 참여종돈장, 협력종돈장 및 핵군AI센터
- 점검사항 : 돼지개량네트워크사업 세부지침 준수, 보조금 사용의 적정성 등

· 농가의 부당행위 사전방지, 건의사항 등 수렴

○ 우수 종돈 구입비 지원 우수정액등처리업체에 대한 현장실사

- 실사기관 : 해당 시·도, 국립축산과학원 및 한국종축개량협회
- 실사내용 : 보조금 지급 대상종돈의 유무, 우수정액등처리업체 인증 기준 및 의무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 한국종축개량협회는 현장실사 결과를 국립축산과학원, 시·도 및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제재조치

○ 국립축산과학원과 한국종축개량협회는 연 1회 이상 참여업체의 정부지원자금 운영실태 및 돼지개량네트워크 사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 보조금의 목적 이외 사용, 허위자료에 의한 보조금 집행 및 관련규정을 위반한 경우 보조금 회수 조치

○ 사업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 사업대상자에서 제외될 경우 보조금 지급 중단 및 이미 지원된 사업비 회수(종돈의 감가상각을 고려하여 탈퇴한 해로부터 과거 2년내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하고 정책사업 지원대상자에서 2년간 제외). 다만, 참여업체의 가축전염병 발생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사업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사업참여 취소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국립축산과학원과 한국종축개량협회가 매년 사업을 평가한 결과 사업실적이 부진하거나 시정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업대상자

② 참여 및 협력 종돈장이 사업참여 취소를 요청할 경우

○ 한국종축개량협회는 부당행위 및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보조금이 집행되었음을 확인하면 국립축산과학원과 협의하여 보조금 회수 및 장비 반납조치

② 우수 종돈 농가보급

가. 사업대상 및 지원요건

❑ 사업대상

○ 돼지 정액등처리업체(인공수정센터)

❑ **지원요건**

○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정액등처리업 허가를 받은 돼지인공수정센터로서 우수정액등처리인증업체로 인정받았거나, 시·도에서 사업자로 지정된 업체

나. 대상자 선정방법 및 절차

❑ **세부계획수립**

○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도와 협의하여 지원대상, 지원기준 및 절차, 지원단가 등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별도 수립하여 통보('15.2월)

○ 시·도는 사업대상자 선정계획을 자체수립('15.1월)

❑ **사업대상자 선정 절차**

○ 시·도는 정액등처리업 허가를 받은 돼지인공수정센터를 대상으로 사업대상자 선정에 대한 세부추진계획 안내 및 참여 대상자 모집 공고 실시

○ 시·도는 사업대상자 선정 시 축산법 제26조에 따른 우수정액등처리업체를 우선 대상자로 고려하되, 방역·위생관리 수준, 정액 품질관리능력 등을 고려하여 2개소 내외로 선정

- 참여 희망업체의 신청서류 및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필요시 현장실사를 통해 확인한 후 최종 선정
- 선정결과는 해당 돼지인공수정센터 및 농림축산식품부에 통보

다.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돼지개량네트워크 사업참여 종돈장에서 생산된 우수 종돈 우수 종돈 구입비

라. 사업내용 및 지원형태

❑ 사업내용

○ 돼지개량네트워크 참여 종돈장의 종돈 유전능력평가결과 상위 종돈을 인공수정센터에 지원하여 우수 유전자원이 농가에 보급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

- 돼지 인공수정센터가 우수 종돈을 확보하여 농가에 유전자원을 보급할 수 있도록 우수 종돈과 일반종돈과의 구입비 차액 일부 지원
- 사업대상 및 지원물량 : 도별 2개소 내외, 연간 총 1천두,

○ 지원 대상 종돈 : 유전능력평가 결과 유전능력 상위 종돈

- 국립축산과학원에서 돼지개량네트워크사업 부계종돈 분야에 참여하는 참여·협력 종돈장 검정종돈의 유전능력을 평가하여 우수 종돈 선발
- 대상여부는 전체 유전능력평가 두수, 능력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

* 모계통(랜드레이스 및 요크셔)은 우수 AI 인증기준에 적합한 종돈

❑ 지원형태

○ 평가결과 유전능력 상위 종돈을 정액처리업체가 구매할 경우 해당 돼지에 일반 종돈 구입가와의 차액의 비용을 지원

- 지원액, 지원절차 및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통보
- 지자체는 사업대상 정액처리업체 선정, 해당 종돈 구입여부 확인

3. 기타사항

○ 한국종축개량협회는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 사업비 지원 및 변경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립축산과학원과 협의하여 결정

<서식1>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사업 참여신청서

1. 사업신청자

이 름	(인)	종돈업등록번호	
업체명		전 화	
주 소			

2. 사업신청내용 : ①참여종돈장 ②핵군AI센터 ③협력종돈장

3. 일반현황

종돈 사육 현황 (두)	모돈 두수(AI센터는 웅돈두수)							
	L	Y	D	B	재래돈	기타	**계**	비고

4. 첨부서류

①
②
③

위와 같이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신청일 : 2015년 월 일
신청인 : (날인 또는 서명)

한국종축개량협회장 귀하

<서식2>

핵군AI센터 우수종돈구입비 지급 신청서

1. 신청자

이 름	(인)	주소	
업체명		전화	
지급계좌번호	_____ (은행) :		

2. 우수 종돈 구입비 지급 신청두수 및 금액 : **두(** **원)**

3. 우수 종돈 구입 내역

연번	품종	개체번호 (등록번호)	생년월일	90㎏도달일령/ 총(생존)산자수	지급대상 확인
1					
2					
3					
4					
5					
6					
7					

※ 90㎏도달일령/총(생존)산자수

※ 지급대상확인란은 사업시행기관이 대상여부를 확인하고 표기

4. 첨부서류 : 계산서 사본 1부

위와 같이 우수 종돈 구입비를 신청하오니 확인 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일 : 2015년 월 일

신청인 : (날인 또는 서명)

한국종축개량협회장 귀하

<서식3>

수퇘지 검정 지원비 지급 신청서

1. 신청자

이 름	(인)	주소	
업체명		전화	
지급계좌번호	_____ (은행) :		

2. 수퇘지 검정 지원비 지급 신청두수 및 금액 : 두(원)

3. 수퇘지 검정 지원 신청내역

연번	품종	개체번호 (등록번호)	생년월일	지급대상 확인	비고
1					
2					
3					
4					
5					
6					
7					

※ 지급대상 확인란은 사업시행기관이 지급가능여부를 확인하고 표기
※ 신청두수가 많은 경우 첨부하여 제출(전산자료 출력가능)

위와 같이 수퇘지 검정 지원비를 신청하오니 확인 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일 : 2015년 월 일
신청인 : (날인 또는 서명)

한국종축개량협회장 귀하

<서식4>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사업 참여·협력 종돈장 의무이행각서

돼지개량 네트워크 구축사업 (참여종돈장 , 협력종돈장)으로서 아래와 같이 의무이행사항을 준수하기로 한다.

❑ 참여 종돈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의무사항을 이행한다.

○ 참여모돈 두수의 10%이상을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사업에서 선발된 핵군종모돈 정액을 이용하여 계획교배 실시

○ 참여모돈이 생산한 자손 중 일정두수 이상을 검정한다.

* 참여종돈장 : 부계 ♀2두, ♂2부/복당, 모계 ♀3두, ♂0.5두/복당 이상

* 협력종돈장 : 부계 ♀1두, ♂1부/복당, 모계 ♀1.5두, ♂0.25두/복당 이상

○ 참여모돈 전두수 자돈등기를 실시한다.

○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사업의 운영에 관한 중요 결정사항을 이행한다.

❑ 참여 및 협력 종돈장은 의무사항 불이행시 시정 조치를 받거나 사업대상에서 제외된다.

○ 주관·시행기관에서 매년 사업을 평가한 결과 사업실적이 부진하거나 의무사항 불이행시 시정조치 또는 사업대상자에서 제외된다.

○ 부당행위, 사업부진 및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이미 집행 된 보조금은 회수 및 반납한다.

2015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날인 또는 서명)

한국종축개량협회장 귀하

<서식5>

질병검사비 지급 신청서

1. 신청자

이 름	(인)	주소	
업체명		전화	
지급계좌번호	_____ 농협(은행) :		

2. 신청두수 및 금액 : **두(** **원)**

3. 질병검사 내역

연번	개체번호 (등록번호)	생년 월일	질병검진항목					추가 검진항목	기타
			돈열병	오제스키	구제역	브루셀라	PRRS		

※ 신청대상돈이 많은 경우 질병검진결과 내역 첨부 가능

4. 첨부서류 : 질병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질병검사결과 및 청구서류 사본 1부

위와 같이 질병검사비를 신청하오니 확인 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일 : 2015년 월 일
신청인 : (날인 또는 서명)

한국종축개량협회장 귀하

<서식6>

사료효율 측정기 구입 희망 신청서

1. 신청자

이 름	(인)	주 소	
업체명		전 화	

2. 신청수량 : 대

3. 참여 모돈두수 현황

종돈 사육 현황 (두)	참여 모돈두수							
	L	Y	D	B	재래돈	기타	**계**	비고

※ 사료효율 측정기를 통해 측정된 기록은 시행기관에 보고

위와 같이 사료효율 측정기 구입을 신청합니다.

신청일 : 2015년 월 일
신청인 : (날인 또는 서명)

한국종축개량협회장 귀하

<서식7>

우수정액등처리업체 우수종돈 구입비 지급 신청서

1. 신청자

이 름	(인)	주소	
업체명		전화	
지급계좌번호	_____ (은행) :		

2. 구입비 지급 신청두수 및 금액 : **두(** **원)**

3. 우수 종돈 구입 내역

연번	품종	개체번호 (등록번호)	생년월일	90kg도달일령 및 일당증체량	등지방두께	구입종돈장	구입일자
1							
2							
3							
4							
5							
6							
7							

4. 첨부서류 : 계산서 사본 1부

위와 같이 우수종돈 구입비를 신청하오니 확인 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일 : 2015년 월 일
신청인 : (날인 또는 서명)

시·도지사

<서식8>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사업 질병검사 의뢰서

의뢰업체명 :

의뢰내용 :

예) ○○종돈장에서 핵군AI센터 입식 종돈 질병검사 의뢰
핵군AI센터 월 정기 질병검사 의뢰
○○종돈장에서 입식한 종돈 질병검사 의뢰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질병검사를 의뢰합니다.

2015. . .

의뢰자 : (서명또는날인)

□ 질병검사 결과

연번	개체 번호	검사 대상 (혈액또는정액)	검사결과									
			항체검사						항원검사			
			PRRSV	FMDV	ADV	CSFV	PPV	Brucella	PRRSV	PCV2	CSFV	PPV
1												
2												
3												
4												
5												
6												
7												
8												
9												
10												

※ 의뢰두수가 많은 경우 검사결과 첨부

질병검사 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검사일 : 2015. . .
검사처 :
검사자 : (서명또는날인)

<서식9>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사업 추진실적 보고(/4분기)

1. 사업 추진 실적

세 부 사 업 명	단위	연간계획 (A)	(/4분기)까지		진 도(%)	
			계획(B)	실적(C)	C/B	C/A
○ 돼지개량 네트워크사업						
부계						
- 참여업체	개소					
- 정액공유	복					
- 검정(수)	두					
- 검정(암)	두					
- 육질검정(육안)	두					
- 육질검정(이화학)	두					
- 종돈선발	두					
모계						
- 참여업체	개소					
- 정액공유	복					
- 검정(수)	두					
- 검정(암)	두					
- 육질검정	두					

2. 사업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명	사업 대상	사업량				사 업 비		
		전년	계획	실적	%	축발기금		
						계획	실적	%
○돼지개량네트워크사업비								
- 수퇘지검정지원비								
- 우수 종돈구입비								
- 해외유전자원도입								
- 질병검사비								
- 육질검사비								
- 친자감별비								
- 정액택배비								
○운영비								
- 회의비, 인건비 등								
○자산비								
- 등지방측정기, 돈형기 등								

MEMO

MEMO

MEMO

MEMO

공 통

10 종축등록사업(한우선형심사)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 목 적

○ 한우의 육량과 경제수명 및 후대축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체형 형질에 대한 개량방향을 설정하여 우수한 개체를 선발

○ 선형심사를 활용한 개량농가 선발·도태 정보 제공

나.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제5조(개량목표의 설정), 제7조(가축의검정) 및 제47조(기금의 용도) 등

다.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이후
합 계	829	200	200	500	
- 보 조	600	60	60	150	
- 융 자					
- 지방비					
- 자부담	229	140	140	350	

라. 사업주관기관 : 한국종축개량협회

마. 사업추진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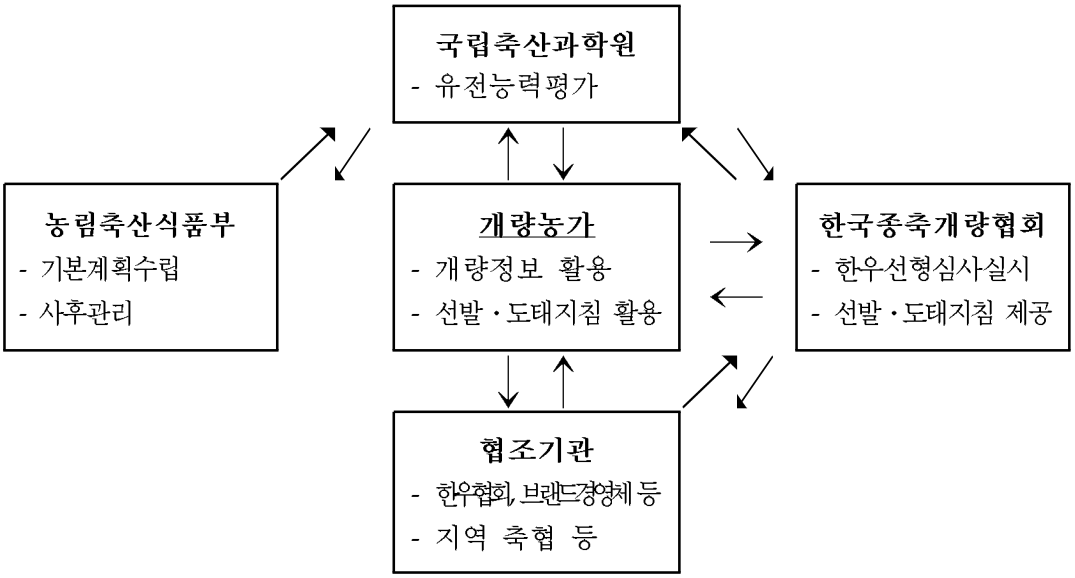

<한우 선형심사>

2. 2015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가. 사업대상 및 지원요건

❑ 사업대상자 : 한국종축개량협회

❑ 지원요건 : 종축등록 및 가축외모심사 기준 공고기관

나. 대상자 선정방법 및 절차

❑ 한국종축개량협회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최종대상자선정 등 사업추진

다.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한우 선형심사비 : 선형심사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 지원

라. 지원형태 및 사업내용

❑ 지원형태 : 축산발전기금 정액보조

❑ 사업내용

○ 한국종축개량협회는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공고 및 대상자 모집

- 한국종축개량협회 홈페이지(http://www.aiak.or.kr) 공고 및 홍보
- 선형심사사업 신청업체는 한우선형심사 신청서(서식1)를 작성하여 한국종축개량협회에 제출
- 한국종축개량협회는 한우선형심사 신청서를 접수하여 세부사업 추진계획을 수립

○ 기본계획에 따라 전년도 사업실적을 기준으로 물량배정

○ 사업대상 선정 : 기초등록 이상우로서 한우암소검정참여농가 및 번식농가에서 신청 받아 선정함

○ 심사대상우 : 우군심사(농가단위)를 원칙으로 하며, 1산차 이상 분만기록이 있는 기초등록 이상인 개체

○ 심사형질 : 개체정보, 전체외모, 몸의 품위, 번식, 유방, 다리, 발굽

○ 한국종축개량협회는 사업을 신청한 농가에 방문하여 선형심사를 실시하고, 선형심사 자료를 D/B구축

- 유전능력을 평가하여 선형심사결과표 및 개체별 개량요망부위가 기재된 계획교배용 씨수소 선정표를 농가에 발송하고 선발·도태의 지침으로 활용

마.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한우 선형심사비 : 3,000원/두

바. 자금배정 및 집행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농림축산사업 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등을 따름

사.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 이행점검

○ 한국종축개량협회는 계획대비 추진실적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추진실적 점검 : 분기별 1회
- 점검항목 : 계획대비 사업추진 실적

○ 한국종축개량협회는 한우 선형심사성적을 분석하여 성적표를 농가, 지역조합에 제공

❑ 사후관리

○ 한국종축개량협회는 혈통관리를 철저히 이행하지 않는 사업대상자는 참여제한 가능

○ 한국종축개량협회는 연 1회 이상 선형심사자료를 분석하여 심사성적 신뢰도를 향상시킬 것

❑ 결과 보고 및 정산

○ 한국종축개량협회는 분기별 사업추진 실적을 국립축산과학원에 보고하고, 국립축산과학원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한국종축개량협회는 사업완료 후 농림축산식품부에 정산보고

- 선형심사 결과에 따른 한우개량 활용도 및 경제성 분석 포함

3. 기타사항

가.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한우 선형심사 결과보고회 개최

○ 한국종축개량협회 한우개량부는 선형심사결과의 평가를 위해 한우선형심사 결과보고회를 개최하여 지역축협 및 농가의 개량의욕 고취

○ 참여대상 : 해당 연도 참여 조합 및 농가

○ 평가항목 : 선형심사 실적, 선형형질 17형질, 등급형질 9형질

○ 환류 : 실적이 저조하거나 개량성과가 낮은 사업대상자의 독려 또는 제한

11 가축개량기술교육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 목 적

○ DDA · FTA에 대응하여 선진화된 가축개량 기술교육을 통해 축산농가의 신기술 습득과 기술력 향상

- 개방화시대를 맞아 새로운 기술(개량, 초음파, 컨설팅, 선형심사 등)을 축산농가에 보급함으로써 생산성 향상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

- 개량농가 · 선도농가를 중심으로 집중 교육하여 고유 유전자원 보호 및 고급육생산 기반 확충

○ 전문화된 농가 지도요원 육성으로 신기술의 보급 효과 확산 및 내실 있는 가축개량사업 추진

○ 축산분야 R&D 과제의 사전 발굴 및 추진방향 검토를 통해 축산업이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술개발 및 보급

나.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제47조(기금의 용도)

다.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이후	2016년이후
합 계	220	220	200	200	200
- 보 조	200	200	180	180	180
- 융 자					
- 지방비					
- 자부담	20	20	20	20	20

라. 사업주관기관 : 국립축산과학원

○ 시행기관 : 농협 가축개량원

○ 교육기관 : 국립축산과학원, 농협, 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 한국종축개량협회 등

○ 교육대상 : 한우 및 젖소농가, 전문 검정요원(컨설턴트), 조합 지도원, 개량기관 소속직원, 학계·연구기관·업계 종사직원 등

마. 사업추진체계

구 분	기관명	주요업무	비 고
총괄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사업 주관기관 세부 기술교육 사업계획 승인 및 자금 배정 ○사업 총괄 관리	
주관기관	국립축산과학원	○교육사업 세부 추진계획수립 ○교육계획 승인요청 및 자금배정 신청 ○교육기관 사업비 배분,교육계획 변경 검토 및 승인 ○사업 평가 및 환류	
시행기관	농협 가축개량원	○사업비 집행 및 교육기관별 정산 ○사업 완료보고 및 정산	
교육기관	교육시행기관	○교육 및 사업비 집행계획 제출 ○사업비 신청 ○교육결과 및 정산 보고	

2. 2015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가. 사업대상 및 지원요건

○ 교육기관

- 가축개량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농가 및 지도원 등 전문요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을 신청한 기관

- 농식품부 계획에 따라 축산분야 R&D 추진을 위해 학계, 연구기관, 업계 등의 전문가로 미래축산포럼을 구성하고, 운영계획을 마련하여 사업비를 신청한 기관

○ 교육대상

- 양축농가 : 한우 또는 젖소 사육농가로 교육참석 희망서 제출 농가
- 전문 검정요원(컨설턴트) : 지역축협, 한우조합 등에 근무하면서 검정참여농가 가축 검정,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는 검정요원
- 조합 지도원 : 지역축협, 한우조합 등에 근무중인 지도원
- 가축개량 기관 소속직원 : 가축개량기관에 근무중인 직원
- 학계, 연구기관, 축종별 연구회, 관련업계 근무중인 직원
- 기타 : 일반인으로 해당 교육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선정된 사람

나. 교육대상자 선정방법 및 절차

❑ 수요조사

○ 국립축산과학원은 교육비 집행지침과 교육사업 계획서를 마련하여 해당 교육기관에 수요조사 실시('14.1월)

○ 해당 교육기관은 교육비 집행지침과 교육사업 계획서를 토대로 교육 계획서를 작성하여 국립축산과학원에 신청('15.1월)

❑ 대상자 선정

○ 국립축산과학원은 각 기관별 교육계획서를 검토하여 교육계획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승인 신청('15.2월)

○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제출한 교육계획을 검토 후 가축개량기술교육을 확정하고 국립축산과학원에 통보

○ 국립축산과학원은 확정된 교육계획을 농협 가축개량원 및 각 교육기관에 통보('15.2월)

다.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가축개량기술교육 신청기관의 교육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으로 제한

○ 미래축산포럼 신청기관의 포럼 운영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으로 제한

라. 사업량 및 지원조건

❑ 교육비 지원기준

○ 국립축산과학원은 해당 교육기관에서 교육비 집행지침을 적용하여 제출한 "가축개량기술교육 계획서"를 검토하여 교육기관별 가축개량기술교육비 예산 및 지원기준을 확정하고 농협 가축개량원에 통보

- 교육 인원, 기간 및 내용 등을 검토하여 교육비 지원기준 확정

❑ 지원방법

○ 농협 가축개량원은 해당 교육기관별 가축개량기술교육비 지원기준을 바탕으로 교육기관으로부터 사업비 교부신청을 받아 해당 교육기관 법인 통장으로 교육비 지급

❑ 사업의무

○ 사업비 세부 집행기준에 맞추어 교육계획 수립 및 사업비 집행

○ 수립된 교육계획을 해당 연도에 필히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다음 연도 교육기관 지정에서 제외

○ 각 교육기관은 사업주관기관인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교육대상자별로 정한 주요 교육내용을 필히 포함하여 교육을 실시

○ 각 교육기관은 교육완료 후 사업비 정산을 위해 교육결과 및 집행내역을 농협 가축개량원에 보고하고, 교육결과의 평가 · 환류를 위해 교육 및 설문조사 결과를 국립축산과학원에 보고

마. 교육과정 및 범위

교육과정		교육대상	주요 교육내용
농가교육		○ 한우·젖소 육종농가	○ 암소검정우 유전능력 평가 ○ 계획교배를 통한 계절번식 방향 ○ 후대검정사업의 이해
컨설턴트 교육	유우군 검정원 기술교육	○ 유우군능력 검정원	○ 계획교배를 위한 정액선택 요령 ○ 검정기록 지침 및 조사방법 교육 ○ 교육을 통한 정확한 검정자료 생성
	한우암소검정 사업단 기술교육	○ 컨설팅기관 ○ 조합지도원 ○ 일반 컨설턴트	○ 한우 암소검정사업 실시 요령 ○ 암소검정 친자확인 교육 및 활용 ○ 암소검정 전산시스템 이용방법
전문가 교육	가축인공수정사 교육	○ 개업인공수정사	○ 가축개량시책 방향 ○ 가축개량 정보보급 및 계획교배 추진 ○ 가축의 개량효과
	선형심사교육	○ 한우 및 젖소관련 기관 실무자,농가	○ 한우 및 젖소 체척 및 심사실습 ○ 한우 및 젖소의 해부학적 이해 및 외모심사법
	개량기관 기술교육	○ 개량기관 소속직원	○ 가축개량 정책방향 설명 및 토론 ○ 가축개량목표 달성도 평가방법 ○ 가축개량 현황 토의
축산분야 R&D	미래축산포럼	○ 학계, 연구기관, 업계 등 전문가	○ 축산 기술과제 활용방안 마련 ○ 축산분야 기술개발 및 로드맵 작성 ○ 축산분야 현안사항 논의 및 기술개발 과제 검토 등
합 계(7개 과정)			

※ 2014년 교육실적을 감안하여 2015년 세부추진계획 통보

바. 자금배정 및 집행

❑ 교육기관 사업비 신청

○ 해당 교육기관은 기관별 지원한도액에 자부담(20%)을 포함한 교육계획서를 마련하여 교육개시 1개월 전에 농협 가축개량원에 사업비 지급 신청

- 구비서류 : 교육계획서, 보조금 교부신청서, 자금집행계획서, 계좌이체의뢰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 단, 미래축산포럼 운영기관은 자부담(20%) 제외

❑ **자금배정**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 「농림수산사업 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등을 따름

❑ **교육기관 사업비 지급**

○ 농협 가축개량원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자금배정 및 국립축산과학원의 교육비 지원기준에 따라 농협 축발기금사무국에서 자금을 수령하여 해당 교육기관에 지급

❑ **교육기관 자금집행**

○ 교육기관은 국립축산과학원에 제출한 교육계획서의 항목별 자금 집행 계획에 따라 집행

○ 기타 자금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과「농림수산사업 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등을 따름

3. 사후관리

가.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 **교육기관에 대한 사전 교육 실시**

○ 국립축산과학원과 농협 가축개량원은 가축개량기술교육 평가 및 환류계획과 가축개량기술교육 및 교육비 집행지침에 대해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교육기관 담당자 교육실시('15.3월)

❑ **교육기관 사업비 신청서 검토**

○ 농협 가축개량원은 각 교육기관에서 신청한 사업비 신청서류에 대해 교육내용 및 사업비 집행기준 적용 여부 등을 검토하여 자금지원

❑ 결과보고 및 정산

○ 교육기관 결과보고

- 각 교육기관은 사업비 집행기준을 적용하여 교육을 실시
- 각 교육기관은 교육비 정산을 위해 교육종료 후 2주 이내에 교육결과 및 집행내역을 농협 가축개량원에 보고하고, 집행잔액은 원금과 이자를 구분하여 지정된 계좌로 반납
- 각 교육기관은 교육의 평가 및 환류를 위해 교육결과 및 교육참석자에게 실시한 설문결과(엑셀작성)를 교육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국립축산과학원에 제출

○ 교육 결과의 취합·보고 및 정산

- 농협 가축개량원은 각 교육기관별로 취합한 교육결과 및 정산내역을 국립축산과학원에 보고하고, 집행잔액은 원금과 이자를 구분하여 농협 축발기금사무국으로 반납
- 국립축산과학원은 각 교육기관별 교육결과, 평가결과, 당해 연도 정산내역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나.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교육기관별 교육실적 평가

성과지표	목표	산출방법	지표 설정사유
교육 참석율	80%	참석자/계획인원	사업홍보 노력도 평가
교육 만족도	80점	참석자 설문조사	수요자 중심의 교육실시 평가
학습 성취도	60점	참석자 Quiz 등	학습목표 달성정도를 평가하여 교육의 효과를 분석

❑ 교육평가에 따른 환류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교육기관은 다음 연도 교육기관 지정 제외. 단, 미래축산포럼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1. 평가결과 교육 참석율 60% 미만
2. 교육 만족도 점수 60점 미만
3. 학습성취도 40점 미만

○ 국립축산과학원은 각 교육기관이 제출한 설문결과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 및 교육기관에 보고·통보한다.

○ 각 교육기관은 국립축산과학원에서 통보받은 교육평가 내용을 교육과정(교육내용, 일정, 강사진 등)의 질적 개선에 활용한다.

4. 기타사항

❑ 2016년도 사업 수요조사

○ 2016년 교육기관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은 '15.12월에 실시하는 교육 수요조사시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국립축산과학원에 신청

- 교육기관은 자부담 20%를 포함한 교육계획서 제출
- 미래축산포럼은 운영을 교육계획으로 대신하며, 자부담(20%) 제외

MEMO

MEMO

MEMO

MEMO